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는

새롭게 추진되는 시책사업과
법령, 조례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 등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책자는

고창군내 14개 읍·면 민원실 등에 비치하고
고창군 홈페이지(<http://gochang.go.kr>)를 통해
군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 창 군

- 목 차 -

I. 경제·산업·청년

| | |
|----------------------------------|----|
| 1. 고향사랑기부제 실시 | 2 |
| 2.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 | 3 |
| 3.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 | 4 |
| 4. 군수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 5 |
| 5. 투자기업 지원제도 확대 | 6 |
| 6. 고창사랑 상품권 운영 | 7 |
| 7. 고창지역 초·중·고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 | 8 |
| 8. 지역인재 새 출발 준비금 지원 | 9 |
| 9. 청년정책 거버넌스 “청년공감마당”추진 | 10 |
| 10.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확대 | 11 |
| 11.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 | 12 |
| 12. 청년 신규창업 및 가업승계 지원 | 13 |
| 13. 고창군 청년정책 통합 정보지 발행 | 14 |

II. 복지·여성·보건

| | |
|--------------------------------------|----|
| 1. 호국보훈수당 인상 및 대상 확대 | 16 |
| 2.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의료비 지원 | 17 |
| 3.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18 |
| 4. 산후 조리비 지원 확대 | 19 |
| 5.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재산기준 완화 | 20 |
| 6.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기준 개선 | 21 |
| 7.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 22 |
| 8.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 23 |
| 9.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금액 확대 | 24 |
| 10.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지원 | 25 |
| 1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확대 지원 | 26 |
| 12.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 27 |
| 13. 로타바이러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도입 | 28 |
| 14.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한도 상향 | 29 |
| 1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 30 |
| 16.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 31 |
| 17.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가구 확대 | 32 |
| 18.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점검이 지원사업 | 33 |
| 19.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 34 |
| 20. 경로당 와이파이 구축 지원사업 | 35 |
| 21. 전북형 노인결핵검진 실시 | 36 |
| 22. 만 65세 이상 보건기관 이용자 본인부담금 면제 | 37 |
| 23.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 38 |

III. 농·축·수산·식품

| | |
|------------------------------------|----|
| 1.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 40 |
| 2.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확대 | 41 |
| 3.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 확대 | 42 |
| 4.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단가 인상 | 43 |
| 5.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가 인상 | 44 |
| 6. 식육포장처리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45 |
| 7.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 46 |
| 8. 꿀벌 구제약품 지원 확대 | 47 |
| 9.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유도등 설치 | 48 |
| 10.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 49 |
| 1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대출 이차보전 | 50 |
| 12. 마을 드론 방제 확대 지원 | 51 |
| 13. 농작업 대행서비스 상시 지원으로 확대 | 52 |
| 14.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단가 상향 | 53 |
| 15.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기증 확대 | 54 |

| | |
|----------------------------------|----|
| 16.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대상 확대 | 55 |
| 17. 농업용 친환경 전기운반차 지원 시행 | 56 |
| 18. 전략작물 직불금 시행 | 57 |
| 19.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시행지침 개정 | 58 |
| 20. 농작물 재해보험 보조비율 상향 지원 | 59 |
| 21. 시설하우스 사업 지원단가 인상 | 60 |
| 22.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보조비율 상향 조정 | 61 |
| 23. 농촌인력 수급확대 추진 | 62 |
| 24. 행복콜택시 운행 확대 | 63 |
| 25.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시행 | 64 |
| 26.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 65 |

IV. 세제·부동산·행정

| | |
|-----------------------------------|----|
| 1.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 67 |
| 2.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 | 68 |
| 3.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 69 |
| 4. 건축물 원시취득 과세표준 개정 | 70 |
| 5. 무상취득(상속제외)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도입 | 71 |
| 6. 유상거래 과세표준 기준 변경 | 72 |
| 7. 쉽고 빠른 규제개혁신고센터 상시 운영 | 73 |

V. 문화·체육·관광

| | |
|------------------------------------|----|
| 1.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운영 | 75 |
| 2. 유네스코 세계유산 투어 운영 | 76 |
| 3. 반려동물 문화·관광산업 육성 | 77 |
| 4.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 78 |
| 5.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 79 |

VI. 환경·녹지

| | |
|------------------------------------|----|
|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 81 |
| 2.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 82 |
|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4등급까지 확대 | 83 |
| 4.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 84 |
| 5. 우수처리시설 준공 수질검사대상 확대 | 85 |
| 6. 2023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시행지침 개정 | 86 |
| 7.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 88 |
| 8. 산림내 입목벌채 제도 개선 | 89 |

VII. 건설·교통

| | |
|----------------------------------|----|
| 1. 고속·시외버스 요금인상 | 91 |
| 2.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제출 의무화 | 92 |
| 3. 저소득층 그린 모델링 사업 확대 | 93 |
| 4.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확대 | 94 |
| 5.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95 |

VIII. 재난안전·소방

| | |
|--------------------------------|-----|
| 1.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 97 |
| 2. 환경 방사선량 개방형 알리미 확대 설치 | 98 |
| 3. 화재의 예방조치 의무 신설 | 99 |
| 4.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 강화 | 100 |
| 5.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규정 | 101 |
| 6.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대 | 102 |
| 7.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신설 | 103 |
| 8.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리 강화 | 104 |

| | |
|----------------------------------|------------|
| 2023년 달라지는 주요제도(요약) | 105 |
|----------------------------------|------------|

I. 경제·산업·청년

| | |
|----------------------------------|----|
| 1. 고향사랑기부제 실시 | 2 |
| 2.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 | 3 |
| 3.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 | 4 |
| 4. 군수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 5 |
| 5. 투자기업 지원제도 확대 | 6 |
| 6. 고향사랑 상품권 운영 | 7 |
| 7. 고창지역 초·중·고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 | 8 |
| 8. 지역인재 새 출발 준비금 지원 | 9 |
| 9.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 | 10 |
| 10. 전북청년 지역 정착 지원 확대 | 11 |
| 11.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 | 12 |
| 12. 청년 신규창업 및 가업승계 지원 | 13 |
| 13. 고창군 청년정책 통합 정보지 발행 | 14 |

1. 고향사랑기부제 실시

신활력경제정책관 (☎ 063-560-2349)

▣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및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1월 전국 동시 시행됩니다. 기부를 통하여 고향이 발전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

- ▶ 사업기간 : 2023. 1. ~
- ▶ 기부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를 제외한 지자체
- ▶ 기부방법 : 온라인 납부(고향사랑e음시스템)/오프라인 납부(농협)
- ▶ 기부혜택
 -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답례품 3만원)을 돌려줌
 -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지역 특산품 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기부액의 30%내)
- ▶ 기부금 사용처 : 고창군민 복리 증진, 지역문제 해결, 고창관광 활성화 등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2.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

신활력경제정책관 (☎ 063-560-2351)

▣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 (지원목적) 장기적인 경영난 지속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지원을 통해 피해 최소화 및 자생력 회복
- (지원대상) 고창군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용자추천 후 대출금액에 대해 3년간 5% 이차보전 지원

| 구분 | 현행 | | 구분 | 확대 |
|-------|------|---|-------|------|
| 용자 용도 | 운전자금 | | 용자 용도 | 운전자금 |
| 용자 한도 | 3천만원 | ➡ | 용자 한도 | 3천만원 |
| 이차보전율 | 4% | | 이차보전율 | 5% |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

- ▶ 추진배경 :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으로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생력을 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연 4% 이내 이차보전금 지원 → 연 5% 이내 이차보전금 지원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3.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

신활력경제정책관 (☎ 063-560-2361)

▣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 (지원목적) 중소기업 경영난 지속으로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및 경영 안정화

(지원대상) 관내 공장등록 제조업체

(지원내용) 용자추천 후 대출금액에 대해 3년간 5% 이차보전 지원

| 구 분 | 현 행 | 구 분 | 확 대 |
|-------|------|-------|--|
| 용자 용도 | 운전자금 | 용자 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
| 용자 한도 | 5억원 | 용자 한도 | 5억원 (단, 10년 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 1회 한정 10억원) |
| 이차보전율 | 4% | 이차보전율 | 5%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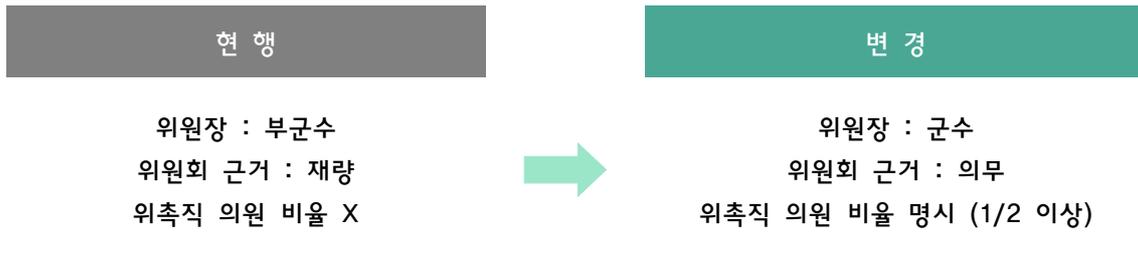
- ▶ 추진배경 : 관내 중소기업(제조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영자금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연 4% 이내 이차보전금 지원 → 연 5% 이내 이차보전금 지원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4. 군수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신활력경제정책관 (☎ 063-560-2359)

▣ 군수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로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조 례) 고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목적) 상설위원회 설치를 통해 위상 및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간위촉직의 비율을 높여 일자리 현안에 대한 현장 대응 및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 발굴 도모
(심의내용)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일자리 창출·취업 지원 등의 사항 등



군수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 ▶ 추진배경 : 일자리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및 시장지향형 일자리 정책 발굴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 현안에 대한 현장 대응력 증대
- ▶ 주요내용 : 군수 직속 일자리 상설위원회 설치 및 민간위촉직 비율 증대
- ▶ 시 행 일 : 2023년 상반기중 1회, 하반기 중 1회 예정

5. 투자기업 지원제도 확대

신활력경제정책관 (☎ 063-560-2354)

▣ 선도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기업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지원목적) 지역 내 기업유치 및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신규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관내 신규 또는 증액 투자한 기업으로서, 2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채용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 (지원내용) 투자유치진흥기금 심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 지원액 최종 결정

| 구 분 | 현 행 | | 구 분 | 확 대 |
|----------------|---|---|----------------|---|
| 신설, 이전 (창업) | 상시고용 인원 20명 이상 | | 신설, 이전 (창업) |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
| 대규모 투자 | 투자금액 1,500억 원 이상 기반시설 설치 비용 100억원 이상 | ➔ | 대규모 투자 |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기반시설 설치 비용 70억원 이상 |
| 시설 투자보조금 | 지원 비율 100분의 5 | | 시설 투자보조금 | 지원 비율 100분의 10 |

투자기업 지원제도 확대

- ▶ 추진배경 :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 확대를 통해 우량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신규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주요내용 : 투자보조금 지원 및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범위 확대, 시설투자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6. 고창사랑 상품권 운영

신활력경제정책관 (☎ 063-560-2351)

▣ 고창사랑 상품권 특별할인 확대 시행합니다.

-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고창군민에게 고창사랑상품권 할인 및 발행 확대로 가계경제 도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총 발행액 : 694억
 - 특별할인(10%) : 536억 발행 / 상시 할인
 - 특별할인(20%) : 158억 발행 / 명절 등
 - 월 한도액 : 1인 50만원(지류·카드 포함) / 만19세 이상 신청 가능

▣ NH농협카드를 추가 도입합니다.

- 소상공인 가맹점 카드수수료가 낮은 NH농협카드를 도입 관내 소상공인 부담경감

지류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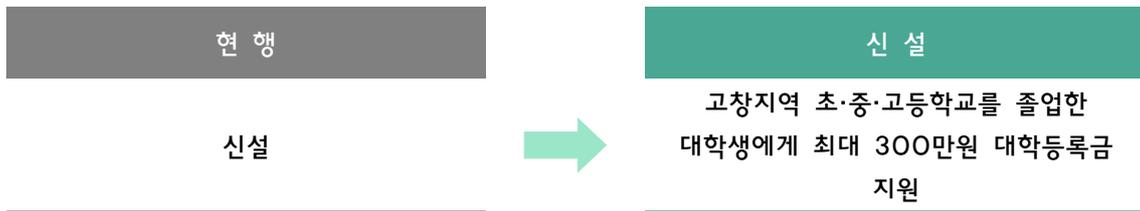
- ▶ 사 용 처 : 고창군 상품권 가맹점
- ▶ 혜 택
 - 소비자 : 평상시 5%할인, 특별할인(10%, 20%)
 - 가맹점 : 소비자 방문 증가, 가맹비 무료, 가게 홍보, 매출 증가
- ▶ 사용방법
 - 카 드
 - 관내 금융기관 방문 신청(우체국 제외)
 - 앱신청(카드·모바일) → 고향사랑페이 앱 설치 및 회원가입 → 신청 → 본인 계좌연결 → 카드충전
 - 지 류 : 관내 금융기관 방문(우체국 제외) → 구매신청서 작성 구입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7. 고창지역 초·중·고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

인재양성과 (☎ 063-560-2926)

▣ 고창지역 초·중·고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

- (추진목적) 군민 모두가 대학생 자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대학 생활로 애향심 고취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입학생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



고창지역 초중고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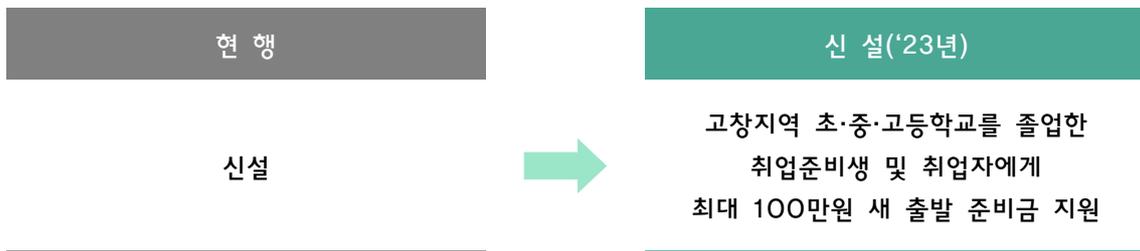
- ▶ 추진배경 : 대학생 자녀를 둔 군민 모두가 대학등록금 300만원을 지원받는 보편복지 실현
- ▶ 주요내용 : 대학등록금 개인 부담금 최대 300만원 지원
- ▶ 시 행 일 : 2023년 하반기

8. 지역인재 새 출발 준비금 지원

인재양성과 (☎ 063-560-2926)

▣ 지역인재 새 출발 준비금 지원

- (추진목적) 취업 준비 등을 위한 새 출발 준비금을 지원하여 애향심 고취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준비생 및 취업자
(지원금액) 최대 100만원



지역인재 새 출발 준비금 지원

- ▶ 추진배경 : 지역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
- ▶ 주요내용 : 취업 준비 등을 위한 새 출발 준비금 최대 100만원 지원
- ▶ 시행일 : 2023년 하반기

9. 청년정책 거버넌스 “청년공감마당” 추진

신활력경제정책관 (☎ 063-560-2367)

▣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청년공감마당” 을 신규 시행합니다.

- (추진목적) 청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 (대 상) 군정과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청년(만 18세 ~ 45세)
 - (내 용) 청년정책 네트워크 → 청년정책협의체 → 청년정책위원회로 이어지는
상향식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축
 - 청년정책위원회 : 위원 15명(위원장 부군수), 청년기본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평가
 - 청년정책협의체 : 관내 청년 30명, 청년정책 제안 및 의견수렴
 - 청년정책 네트워크 : 청년 소통공간 조성을 통한 청년 간 협력체계 및 청년이슈 상시 공유
 - ※ 분야별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청년네트워크 구축
 - 청년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23년 하반기 구축)
 - 청년정책 및 국가 공모사업 등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 청년의 날 주간 행사 및 청년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 청년활동 적극 장려

청년정책 거버넌스 “청년공감마당” 추진

- ▶ 추진배경 : 사회의 일원으로서 청년의 권리 보장
- ▶ 주요내용 :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청년정책의 수혜자인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보장 및
청년이 원하는 삶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10.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확대

신활력경제정책관 (☎ 063-560-2367)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대상자의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지원합니다.

- (추진목적) 정착기반이 약한 취업청년 대상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지역정착 지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해당 분야(농어업·임업·문화예술 등)
6개월 이상 종사 청년(만 18세 ~ 39세)
(지원내용) 관내 취업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정착 수당 지급
- 1인당 월 30만원씩 1년간 360만원 지원

| 현 행 | 확 대 |
|--|--|
| · 지원규모 : 50명 | · 지원대상 : 60명 |
| · 자격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농어업·임업·문화예술 등 1년 이상 종사 | · 자격요건 : 중위소득 180%이하 & 농어업·임업·문화예술 등 6개월 이상 종사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 ▶ 추진배경 : 청년의 소득격차 해소 및 인구유출 방지 도모
- ▶ 주요내용
 - 지원규모 확대 : 기존 규모 대비 20% 증가
 - 자격요건 완화 : (중위소득) 150% 이하 → 180% 이하
(종사기간) 1년 이상 → 6개월 이상
- ▶ 시 행 일 : 2023년 1월 ~

11. 전복형 청년활력수당 지원

신활력경제정책관 (☎ 063-560-2367)

■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전복형 청년활력수당」 신규사업을 시행합니다.

- (추진목적) 미취업 청년 대상 구직활동비 지원으로 청년의 취업의욕 고취 및 사회진입 촉진
(지원대상) 관내 거주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청년(만18세 ~ 39세)
(지원내용)
 -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 지원
 -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하여, 3개월간 근속 시 50만원 지원
 - 취창업 특강, 면접 준비 등 취업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병행 지원

| 현행 | 구분 | 신설 |
|----|------|------------------------|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
| 신설 | 지원내용 | 월 50만원 (6개월간 300만원) |

전복형 청년활력수당 지원

- ▶ 추진배경 : 청년 취업률 향상 및 청년 삶의 질 향상 도모
- ▶ 주요내용 : 청년 구직활동 수당, 취창업 성공금, 취업 관련 서비스 지원
- ▶ 시행일 : 2023년 하반기 예정
- ※ 사업지침 시달 시, 별도 안내

12. 청년 신규창업 및 가업승계 지원

신활력경제정책관 (☎ 063-560-2364)

▣ 청년의 신규창업 및 가업승계 청년의 초기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시행합니다.

- (추진목적) 신규창업 및 초기 기반 확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청년유출 방지 및 안정적인 지역정착 도모
- (지원대상) 청년창업 : 예비창업자 2명
가업승계 : 소상공업 등 가업승계 청년 2명
- (지원금액) 청년창업 : 1명당 17.7백만원 이내
가업승계 : 1명당 30백만원 이내(자부담 포함)

| 현행 | 구분 | 신설 |
|----|------|----------------|
| 신설 | 청년창업 | 1인당 17.7백만원 이내 |
| | 가업승계 | 1인당 30백만원 이내 |

청년 신규창업 및 가업승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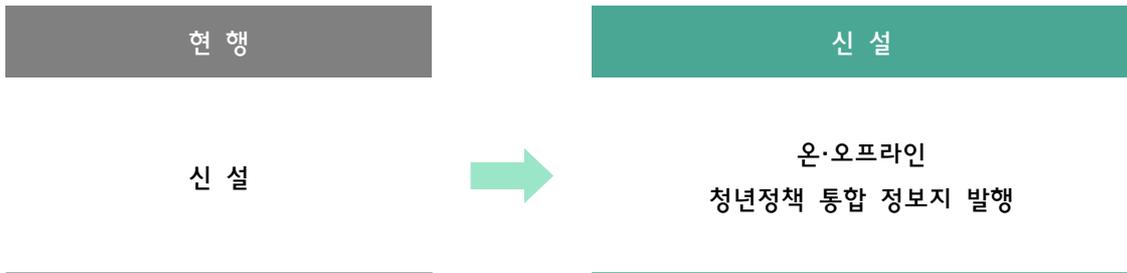
- ▶ 추진배경 : 청년인구 감소에 대응한 창업 경쟁력 향상으로 창업생태계 조성
- ▶ 주요내용
 - 청년창업 : 창업에 필요한 간접비(임차료, 재료비 등), 자기계발비 등 지원
 - 가업승계 : 노후화된 시설(점포) 리모델링, 장비 구입, 홍보물 제작 등 지원
- ▶ 시행일 : 2023년 1월 ~

13. 고창군 청년정책 통합 정보지 발행

신활력경제정책관 (☎ 063-560-2367)

▣ 고창군 청년 맞춤형 정책 안내를 위한 통합 정보지를 발행 및 배부 합니다.

- (추진목적)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청년 및 지역주민 대상 청년정책 통합정보 제공
(대 상) 청년정책에 관심있는 청년 및 지역주민 누구나
(활용계획)
 - 오프라인 : 읍면, 청년단체, 협조기관 등 통합 정보지 배부를 통한 정보 제공
 - 온라인 : 군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게시를 통한 정보 제공



고창군 청년정책 통합 정보지 발행

- ▶ 추진배경 :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청년 및 지역주민 대상 청년정책 안내
- ▶ 주요내용 : 전 시행기관을 망라한 청년정책 통합 정보지 발행·배부
- ▶ 시행일 : 2023년 1월 ~

Ⅱ. 복지·여성·보건

| | |
|--------------------------------------|----|
| 1. 호국보훈수당 인상 및 대상 확대 | 16 |
| 2.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의료비 지원 | 17 |
| 3.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18 |
| 4. 산후 조리비 지원 확대 | 19 |
| 5.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재산기준 완화 | 20 |
| 6.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기준 개선 | 21 |
| 7.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 22 |
| 8.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 23 |
| 9.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금액 확대 | 24 |
| 10.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지원 | 25 |
| 1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확대 지원 | 26 |
| 12.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 27 |
| 13. 로타바이러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도입 | 28 |
| 14.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한도 상향 | 29 |
| 1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 30 |
| 16.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 31 |
| 17.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가구 확대 | 32 |
| 18.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 | 33 |
| 19.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 34 |
| 20. 경로당 와이파이 구축 지원사업 | 35 |
| 21. 전북형 노인결핵검진 실시 | 36 |
| 22. 만 65세 이상 보건기관 이용자 본인부담금 면제 | 37 |
| 23.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 38 |

1. 호국보훈수당 인상 및 대상 확대

사회복지과 (☎ 063-560-2272)

▣ 호국보훈수당이 인상되고, 대상자가 확대 및 명확화하게 정비되었습니다.

- (추진목적) 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 가족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보훈수당 인상 및 사망위로금 대상의 명확화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

(지원대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사망 시 배우자),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사망 시 유족 중 우선순위자),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사망 시 선순위 유족 1명)

(지원금액) 월 11만원 지원 / 사망위로금 100만원 지원(유공자 본인에 한정)

(지급일) 매월 25일 수당 지급

| 현행 | 확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 무공수훈자,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지원· 월 수당 9만원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무공수훈자,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지원· 월 수당 11만원 지원 |

호국보훈수당 추가 지원 및 대상자 확대 · 명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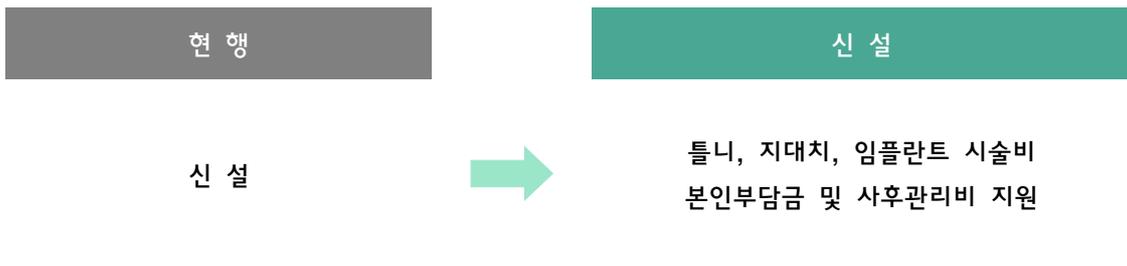
- ▶ 추진배경 :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가족들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생활 안정 지원
- ▶ 주요내용 : 호국보훈수당 수당 인상 및 대상자 확대, 사망위로금 대상 명확화
 - 호국보훈수당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사망시 선순위 자녀)
 - 유족 중 우선순위자로 확대
 - 사망위로금 : 보훈대상자 본인에 대한 지급규정을 명확히 함
 - 지원액 : 월 11만원 지원 / 사망위로금 100만원 지원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2.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의료비 지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560-8755)

▣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임플란트·틀니 의료비(본인부담금)를 신규 지원합니다.

- (추진목적) 임플란트 및 틀니 수혜가 절실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시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의 구강기능 회복 등 건강한 노후의 삶 지원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자
- (지원내용) 틀니(레진상·금속상, 전부·부분)와 지대치(약당 3개), 임플란트(최대 2개) 시술비 본인부담금 및 사후관리비 지원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의료비 지원

- ▶ 추진배경 : 저소득층 어르신이 경제적 부담으로 적기에 구강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해 구강질환 및 저작불편감 증가
- ▶ 주요내용 : 틀니(레진상·금속상, 전부·부분)와 지대치(약당 3개), 임플란트(최대 2개) 시술비 본인부담금 및 사후관리비 지원
- ▶ 시행일 : 2023년 하반기 예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협의 완료 후, 조례 제정 실시)

3.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560-8573)

▣ 출생 순위별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 (추진목적) 출산 가정에 대한 축하와 지역사회 출산 배려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 가정(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1년이 경과한 날 지원)
 (지원내용) 출생 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현 행 | 확 대('23년) - 하반기 예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자녀 100만원 · 2자녀 200만원 · 3자녀 500만원 · 4자녀 700만원 · 5자녀 이상 1,000만원 - 3자녀부터 출생시 50%, 1년 후 50%로 2회 분할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자녀 300만원 · 2자녀 500만원 · 3자녀 750만원 · 4자녀 1,000만원 · 5자녀 이상 2,000만원 - 1자녀 : 전액 일시금 지원 - 2자녀 : 출생 시 250만원, 1년 후 250만원 지원 - 3자녀 : 출생 시 250만원, 1년 후 250만원, 2년 후 250만원 - 4자녀 : 출생 시 250만원, 1년 단위로 250만원 지원(3년간) - 5자녀 이상 : 출생 시 500만원, 1년 단위로 250만원 지원(6년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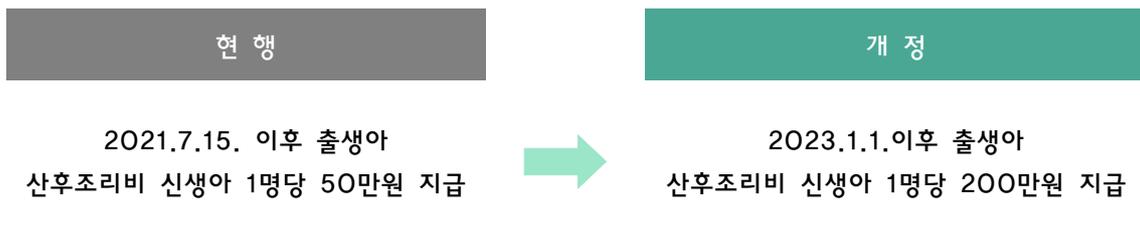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 추진배경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로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저출산 위기 극복 적극 대응
- ▶ 주요내용 : 출생 순위별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 확대 시행일 : 2023년 하반기 예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변경 협의 완료 후, 조례 개정 실시)

4. 산후 조리비 지원 확대

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560-8762)

- 출산가정의 실효성 있는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산후조리비를 확대 지원합니다.
- 2023.1.1.이후 출생아 부터 고창군에 출생신고 한 출산가정 산모에게 산후 조리비를 신생아 1명당 200만원(고창사랑상품권)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산후 조리비 지원 확대

- ▶ 추진배경 : 출산 후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비용 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 ▶ 주요내용 : 고창군 출생신고 신생아 1인당 200만원 지원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5. 기초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재산기준 완화

사회복지과 (☎ 063-560-2283)

■ **기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대규모 수급 탈락이 없도록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 (추진목적)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인 기본재산 공제액, 주거용 재산 한도액 상향으로 지원대상자 확대

| 현 행 | 확 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본재산 공제액<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주거·교육급여 35백만원- 의료급여 29백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주거·교육급여 52백만원- 의료급여 38백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기본재산 공제액<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53백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112백만원 |

기초생계 · 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 ▶ 추진배경 :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주택가격 인상 등에 따른 수급권 탈락을 감안하여 생계 · 의료급여 재산기준 조건 완화
- ▶ 주요내용
 - 지역구분 방식 개편 : 3급지 → 4급지
 - 기본재산 공제액 : 기초생계 · 주거 · 교육급여 35백만원, 의료급여 29백만원
→ 기초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53백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 상향 : 기초생계 · 주거 · 교육급여 52백만원, 의료급여 38백만원
→ 기초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112백만원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6.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기준 개선

사회복지과 (☎ 063-560-2284)

■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기준이 조정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 (추진목적) 지원기준 상향조정으로 약자복지를 위한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강화 (지원기준) 소득 및 재산기준 상향 조정
 - 소득기준(1인기준) 1,558천원 이하
 - 일반재산기준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 (지원금액) 지원금액 인상
 - 생계 지원금액(1인기준) 623천원
 - 연료비 지원금액 110천원
 - 교육 지원금액 : 초 127천원 ~ 고 214천원

| 현 행 | 확 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 1인기준 1,459천원 이하· 일반재산기준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생계 지원금액 488천원(1인기준)· 연료비 지원금액 106천원· 교육 지원금액 - 초 124천원 ~ 고 207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 1인기준 1,558천원 이하· 일반재산기준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생계 지원금액 623천원(1인기준)· 연료비 지원금액 110천원· 교육 지원금액 - 초 127천원 ~ 고 214천원 |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기준 개선

- ▶ 추진배경 : 지원기준 상향조정으로 약자복지를 위한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강화
- ▶ 주요내용 : 긴급복지지원사업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조정 및 지원금액 인상
 - 일반재산기준 : 농어촌 기준 1억3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 생계 지원금액 : 623,3천원(1인기준)
 - 연료비 지원금액 : 110천원
 - 교육 지원금액 : 초 127천원, 중 180천원, 고 214천원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7.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사회복지과 (☎ 063-560-2283)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 (추진목적) 법적기준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나 실제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며,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지원대상자 확대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일반재산 135백만원 이하

(지급일) 매월 30일 수당 지급

(지원금액)

(단위 : 원)

| 생계급여액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280,520 | 466,580 | 598,700 | 729,130 | 854,640 | 975,780 | 1,094,510 |
| 기준중위소득 40%초과 ~ 50%이하 | 140,260 | 233,290 | 299,350 | 364,570 | 427,320 | 487,890 | 547,260 |

현행

- 신청세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동일하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4인이하 834만원, 5인이상 885만원)인 경우 지원불가



확대

- 신청세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동일하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4인이하 834만원, 5인이상 885만원)인 경우 지원불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소득기준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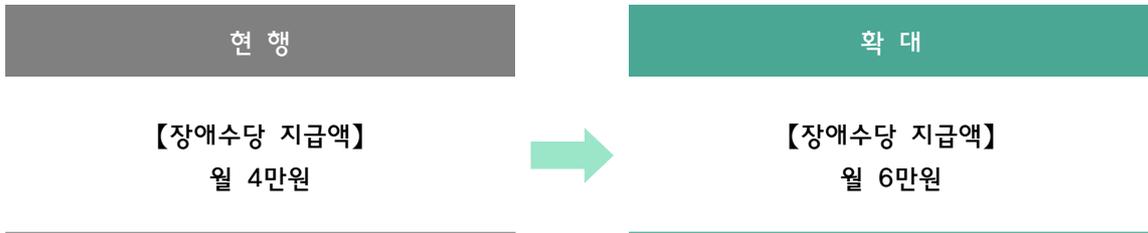
- ▶ 추진배경 : 생활수준은 어려운 실정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 실시 필요
- ▶ 주요내용 : 신청세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8.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사회복지과 (☎ 063-560-2280)

▣ 장애수당 지원 금액이 월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중전3~6급)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보전 및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 ▶ 추진배경 : 장애수당 지급금액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저소득장애인의 실질적 소득보장 도모
- ▶ 주요내용 : 만18세 이상 기초 및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급액 확대 지원
-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월4만원 → 월6만원)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9.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금액 확대

인재양성과 (☎ 063-560-2938)

▣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 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 (추진목적) 출산가정에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수당 지원
(지원대상) 만 0세(0~23개월) 아동
(지원방법) 가정 양육시 현금 지급 및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 바우처 지급

| 현 행 | 확 대 |
|--|---|
| [만 0~1세(0~23개월) 아동] · 가정양육 아동 : 1인당 월 30만원 · 어린이집 이용아동 : 보육료 바우처 | [만 0~1세(0~23개월) 아동] · 가정양육 아동 - 만 0세 : 1인당 월 70만원 - 만 1세 : 1인당 월 35만원 · 어린이집 이용아동 : 보육료 바우처 ※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와 보육료 차액 분 현금 지급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금액 확대

- ▶ 추진배경 : 부모급여 지원을 통한 출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 주요내용 : 만0~1세(0~23개월)아동 가정에 부모급여 지급금액 확대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10.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지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560-8748

▣ 영유아 구강검진을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하여 '총4회'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에 구강검진을 실시했으나, 30~41개월을 추가하여 구강검진 총 4회 실시
 - 1차(18개월) 검진 후 2차(42개월) 검진을 실시하기 전,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30~41개월 검진을 추가하여 총 4회의 구강검진 가능

| 현 행 | 확 대 |
|--------------|--------------|
| (총3회) | (총4회) |
| <1차> 18~29개월 | <1차> 18~29개월 |
| <2차> 42~53개월 | <2차> 30~41개월 |
| <3차> 54~65개월 | <3차> 42~53개월 |
| | <4차> 54~65개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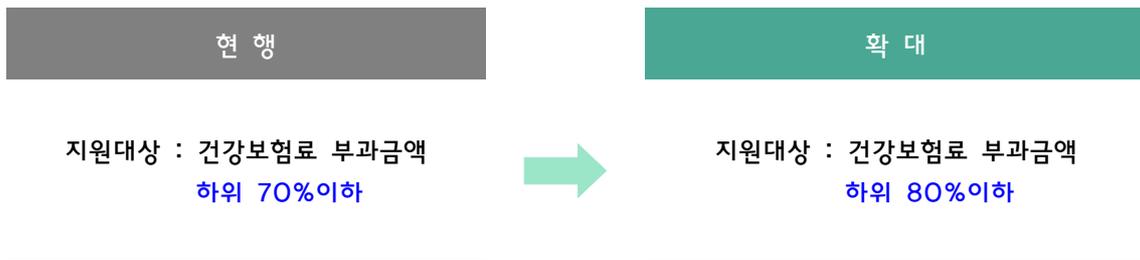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지원

- ▶ 추진배경 : 1차 검진후 2차 검진을 실시하기 전,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이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30~41개월 검진추가
- ▶ 주요내용 : 총3회의 검진에서 30~41개월 검진을 추가하여 총4회 실시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1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확대 지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560-8762)

-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이하 자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이하 자까지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하위 70%이하 자까지 지원했으나, 하위 80%이하 자까지 확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대상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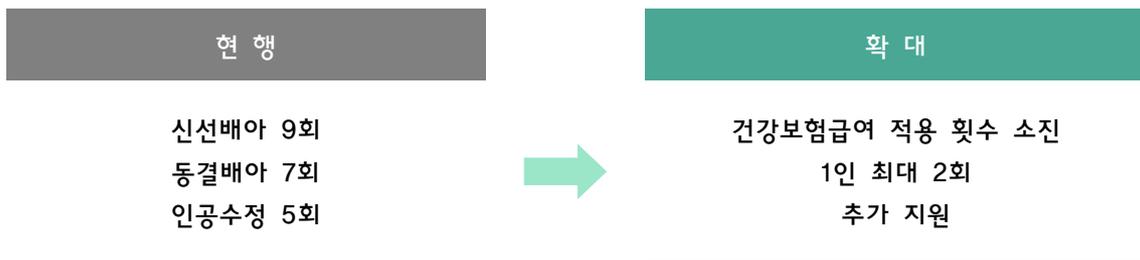
- ▶ 추진배경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대상 확대
 - ※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
- ▶ 주요내용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80% 이하 최대 20만원 지원
- ▶ 시 행 일 : 2023년 상반기 시행 예정

12.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560-8762)

▣ 현행 난임 시술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를 제한하여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에 한하여 1인당 최대 2회 지원(최대180만원)
※ 난임 건강보험급여 적용횟수 소진자에게 추가 지원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 ▶ 추진배경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으로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행복한 가정 영위 도모
- ▶ 주요내용 : 1인 최대 2회, 시술종류와 소득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

| 지원최대금액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
| 신선배아 | 회당 최대 110만원 | 회당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 | 회당 최대 50만원 | 회당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회당 최대 30만원 | 회당 최대 20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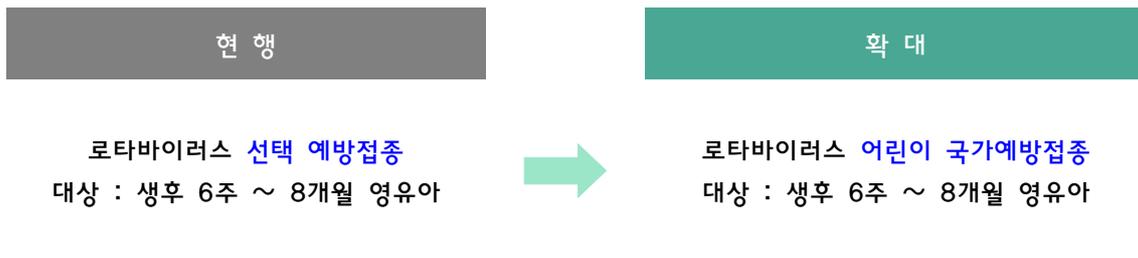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13. 로타바이러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도입

보건소 보건행정과 (☎ 063-560-8758)

■ **선택 예방접종이었던 로타바이러스 백신(RV1, RV5)이 내년 상반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백신 지원 항목에 추가됩니다.**

- (추진목적)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 실시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영유아 건강 보호
- (지원대상) 생후 6주 ~ 8개월 영유아
- (지원내용) 로타릭스(RV1) 2, 4개월 2회 접종 지원
로타텍(RV5) 2, 4, 6개월 3회 접종 지원



로타바이러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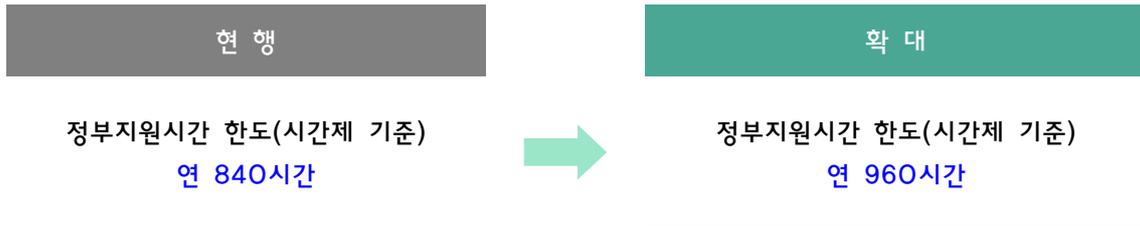
- ▶ 추진배경 :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위장관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로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접종 필요
- ▶ 주요내용 : 로타바이러스 백신(RV1, RV5)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도입
- ▶ 시 행 일 : 2023년 상반기 중(별도공지)

14.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한도 상향

인재양성과 (☎ 063-560-2933)

▣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한도 상향

- (추진목적)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한도 상향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지원대상)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액)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에 따라 가(85%), 나(60%), 다(15%), 유형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한도 상향

- ▶ 추진배경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부담 경감 필요 및 정부지원시간 부족
- ▶ 주요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상향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1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인재양성과 (☎ 063-560-8093)

■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 연장을 강화합니다.

- (추진목적) 보호아동의 자립 준비 시 국가의 보호 아래 자립을 충분히 준비하도록 보호받을 권리 보장
(지원대상) 보호종료예정아동(만18세 이상의 아동생활시설, 가정위탁 보호아동)
(연장조건) 아동 희망 시

■ 보호 종료 연령 확대

| 현 행 | 확 대 |
|------|------|
| 만18세 | 만24세 |

■ 자립수당 지원액 상향

| 현 행 | 확 대 |
|--------|--------|
| 월 35만원 | 월 40만원 |

■ 자립정착금 지원액 상향

| 현 행 | 확 대 |
|-------|---------|
| 800만원 | 1,000만원 |

보호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보호연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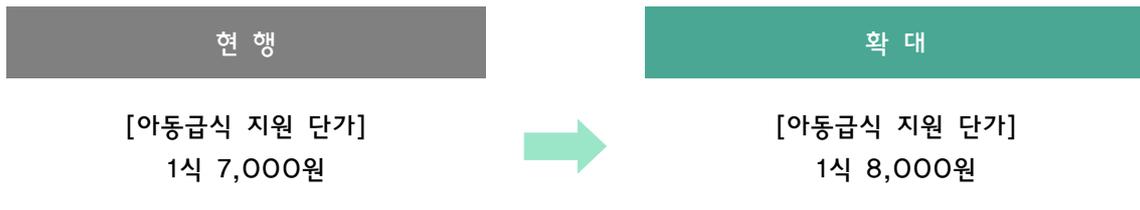
- ▶ 추진배경 : 21년 7월 발표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추진
- ▶ 주요내용 : 보호아동의 종료 연령 확대를 통해 아동이 국가의 보호(시설, 가정 위탁 등) 아래 자립 준비를 견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립 수당과 자립정착금 지원액을 상향해 아동의 출발이 원활하도록 함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16.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인재양성과 (☎ 063-560-2938)

▣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가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확대 됩니다.

- (추진목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지원방법) 위탁업체에서 부식 구입 후 대상 아동 가정에 직접 전달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 ▶ 추진배경 : 급식단가 인상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 ▶ 주요내용 : 결식아동 급식 지원 1식 7,000원→8,000원으로 단가 인상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17.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가구 확대

인재양성과 (☎ 063-560-2932)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격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 (추진목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확대
(지원기준)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 현 행 | 확 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022. 10. 1.부터 중위소득58%까지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자격 소득기준 완화로 중위소득 52%에서 중위소득 60%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18.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

인재양성과 (☎ 063-560-2931)

▣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추진배경)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 가구의 범죄예방 및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필요
- (지원대상) 주민등록 주소가 고창군으로 되어 있는 1인가구
- (지원기준)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지원내용) 건물 현관 등에 실외형 CCTV 설치로 24시간 자동 경비서비스 지원 또는 기타 안심 장비 지원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 추진배경 :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 가구의 범죄예방 및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필요
- ▶ 주요내용 : 건물 현관 등에 실외형 CCTV 설치로 24시간 자동 경비서비스 지원 또는 기타 안심 장비 지원
- ▶ 시행일 : 2023년 중

19.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소 보건행정과 (☎ 063-560-8715)

■ 보건기관 의료장비 보강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업기간) 2023. 01. ~ 2023. 06.
(대 상) 2대(보건소 X-ray 장비, 심원면보건지소 자동약품포장기)
(사 업 비) 2억1천4백만원
(내 용) 노후된 보건기관 의료장비 보강



보건기관 의료장비 보강을 통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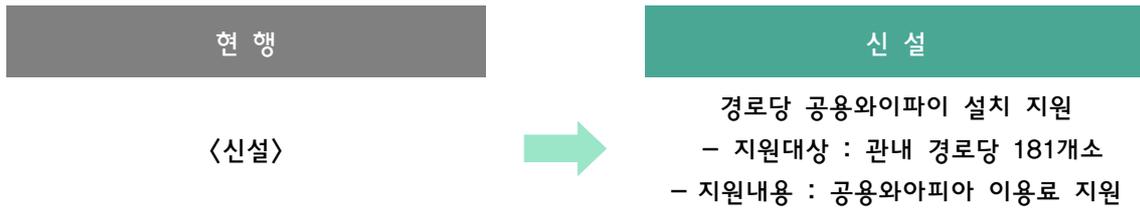
- ▶ 추진배경 : 보건기관 의료장비 보강을 통한 더 나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 ▶ 주요내용 : 보건소 X-ray 장비 교체, 심원면보건지소 자동약품포장기 구입
- ▶ 시 행 일 : 2023년 01월

20. 경로당 와이파이 구축 지원사업

사회복지과 (☎ 063-560-2290)

■ 어르신들의 스마트한 일상을 위해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설치해 드립니다.

- (추진목적) 노년층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보편적인 정보접근을 위한 와이파이 설치로 유익한 정보를 습득하는 등 어르신 스마트공간 마련
(대상) 관내 경로당 181개소
(지원내용) 와이파이 비용 지원(매월 33,000원)
※ 연도별 지원 확대 : '23년 30% → '24년 60% → '25년 90% → '25년 100%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설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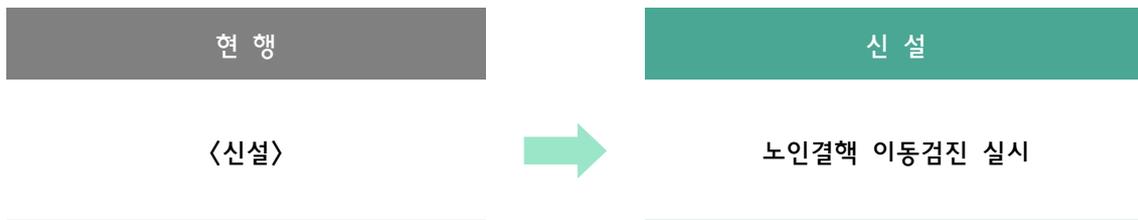
- ▶ 추진배경 :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로 여가 활동 증진 도모
- ▶ 주요내용 : 경로당에 공용와이파이 설치(이용료) 지원
 - 지원규모 : 관내 경로당 181개소
 - 지원내용 : 와이파이 비용 지원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21. 전북형 노인결핵검진 실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 063-560-8777)

▣ 결핵 발생·사망률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합니다.

- 노인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북형 노인결핵검진 사업을 추진하여 고위험군(65세 이상 고연령층, 노인 집단시설 등)에 대한 신속·정확한 검진을 통해 결핵감염원 조기 발견 및 결핵 전파 차단



전북형 노인결핵검진 실시

- ▶ 추진배경 : 결핵 발생률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결핵 검진사업 추진을 통해 결핵 조기발견 및 전파 차단 실시 필요
- ▶ 주요내용 : 관내 65세 이상 건강고위험군 327명 결핵 이동검진 실시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22. 만 65세 이상 보건기관 이용자 본인부담금 면제

보건소 보건행정과 (☎ 063-560-8714)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부담금 면제로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추진목적)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보건기관 접근성을 높여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수명 연장
(대상) 보건기관 이용 만 65세 이상 고창군민
(지원내용) 만 65세 이상 보건기관 이용자 본인부담금 면제

| 현행 | 신규('23년) - 하반기 예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보건지소 처방전 3일 기준 원내500원, 원외 1,100원· 보건진료소 3일 기준 원내 90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 37개소 본인부담금 면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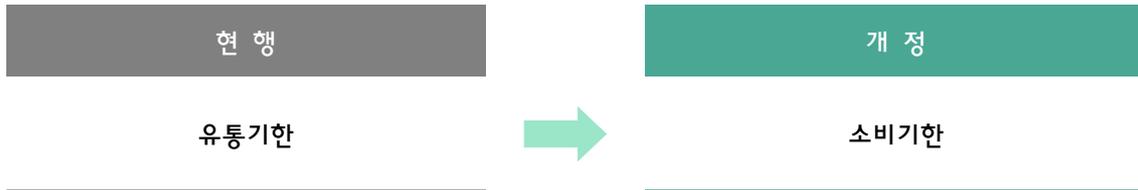
만 65세 이상 보건기관 이용자 본인부담금 면제

- ▶ 추진배경 : 촘촘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기관 이용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부담금 면제로 의료비 부담경감과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
- ▶ 주요내용 : 만 65세 이상 보건기관 이용자 본인부담금 면제
- ▶ 시행일 : 2023년 하반기 예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변경 협의 완료 후, 조례 개정 실시)

23.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환경위생과 (☎ 063-560-2887)

- “유통기한” 이 식품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뀝니다.
- 1985년 이후 유통기한 표시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유통기한이 제품의 제조 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하여,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 ▶ 추진배경 :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선진국에서는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어,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더불어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여 식품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① 법률 제2조(정의) 유통기한 폐기, 소비기한 신설
②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Ⅲ. 농·수·축산

| | |
|------------------------------------|----|
| 1.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 40 |
| 2.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확대 | 41 |
| 3.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 확대 | 42 |
| 4.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단가 인상 | 43 |
| 5.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가 인상 | 44 |
| 6. 식육포장처리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45 |
| 7.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 46 |
| 8. 꿀벌 구제약품 지원 확대 | 47 |
| 9.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유도등 설치 | 48 |
| 10.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 49 |
| 1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대출 이차보전 | 50 |
| 12. 마을 드론 방제 확대 지원 | 51 |
| 13. 농작업 대행서비스 상시 지원으로 확대 | 52 |
| 14.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단가 상향 | 53 |
| 15.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기증 확대 | 54 |
| 16.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대상 확대 | 55 |
| 17. 농업용 친환경 전기운반차 지원 시행 | 56 |
| 18. 전략작물 직불금 시행 | 57 |
| 19.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시행지침 개정 | 58 |
| 20. 농작물 재해보험 보조비율 상향 지원 | 59 |
| 21. 시설하우스 사업 지원단가 인상 | 60 |
| 22.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보조비율 상향 조정 | 61 |
| 23. 농촌인력 수급확대 추진 | 62 |
| 24. 행복콜택시 운행 확대 | 63 |
| 25.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시행 | 64 |
| 26.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 65 |

1.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 063-560-8832, 8834)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대상자 연령 및 정책자금이 확대됩니다.

-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 · 교육 ·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현 행 | 확 대 |
|---------------------------------------|---|
| 지원대상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만50세 미만 | 지원대상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만51세 미만 |
| 지원내용 : 최대 3억원(고정금리 2%,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내용 : 최대 5억원(고정금리 1.5%, 5년거치 20년 분할상환) |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급액이 상향됩니다.

-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

| 현 행 | 확 대 |
|--|---|
| 지원내용 : 영농정착 지원금(최대 3년간) - 1년차 :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지원내용 : 영농정착 지원금(최대 3년간) - 1년차 :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18세이상~만50세미만 → 만18세이상~만51세미만
 - 지원내용 : 최대 3억원 → 최대 5억원
-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18세이상~만40세미만
 - 지원내용 : 영농정착 지원금 100만원→ 110만원(최대 3년간, 영농경력별 차등지급)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2.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확대

농업정책과 (☎ 063-560-2527)

■ 쌀 과잉 문제에 대응하여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 지원품목 확대 및 단가를 상향 지원합니다.

- (추진목적)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 쌀가격 하락 및 시장격리비용 절감
(지원대상)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지원내용)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안보를 위한 타작물 생산 지원

| 현 행 | 확 대 |
|------------------------------------|--|
| 1. 지원품목(2개) - 두류, 일반작물(시군별 1품목) | 1. 지원품목(4개) - 두류(일반콩 제외), 일반작물, 풋거름작물, 휴경 |
| 2. 사업단가 - 60만원/ha | 2. 사업단가 - 200만원/ha |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확대

- ▶ 지원대상 : 타 사업 지원품목 및 제외작물 외 논타작물 전체 품목
 - 관련사업 :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전략작물직불금
 - 제외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생강
- ▶ 지원농지
 - '18 ~ 22년 논타작물 재배지원 참여농지
 - '17년부터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 ▶ 지원단가 : 200만원/ha
- ▶ 사업량 : 163.65ha/327백만원(도비 98, 군비 229)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3.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 확대

농업정책과 (☎ 063-560-2530)

■ 인증비 단가 인상에 따라 농가 부담경감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잔류농약 검사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추진목적)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비 부담을 경감하여 친환경농업 확대 및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유기가공식품 취급자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
-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현 행 | 확 대 |
|--|---|
| 친환경농산물 인증 : 350천원/건 유기가공식품 인증 : 1,000천원/건 취급자 인증 : 550천원/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 : 350천원/건 잔류농약 검사비 : 90천원/건 유기가공식품 인증 : 1,000천원/건 취급자 인증 : 550천원/건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 확대

- ▶ 추진배경 :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비 부담 경감
- ▶ 주요내용 : 잔류농약검사비 지원(90천원/건)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4.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단가 인상

축산과 (☎ 063-560-2614)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축종별 지원단가가 인상됩니다.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목적)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지원대상) '14. 12. 31.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등
(지원율) 용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 현행 | 변경 |
|---|---|
| 〈면적당 단가(천원/㎡)〉 소 260, 돼지 770, 닭·오리 360 | 〈면적당 단가(천원/㎡)〉 소 380, 돼지 967, 닭·오리 662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단가 인상

- ▶ 추진배경 : 축사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지원 단가 현행화
- ▶ 주요내용 : 축종별 지원 단가 상향(천원/㎡)
 - 소 380, 돼지 967, 닭·오리 662
- ▶ 시행일 : 2023년 1월

5.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가 인상

축산과 (☎ 063-560-2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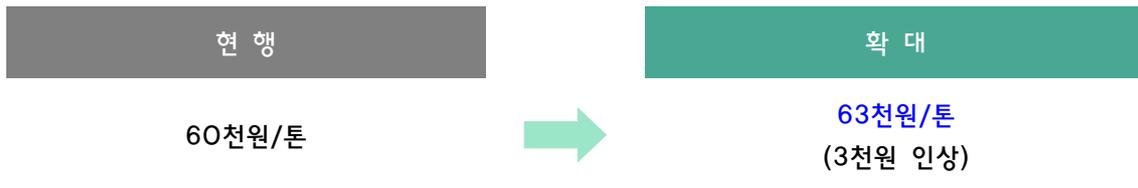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가가 3천원/톤 인상됩니다.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추진목적)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통해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사료작물을 재배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

(지 원 율) 국비 30%, 도비 10%, 군비 50%, 자담 10%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가 인상

- ▶ 추진배경 :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로 생산비 절감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
- ▶ 주요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가 3천원/톤 인상
 - 2022년 : 60천원/톤 → 2023년 : 63천원/톤
- ▶ 시 행 일 : 2023년 1월

6. 식육포장처리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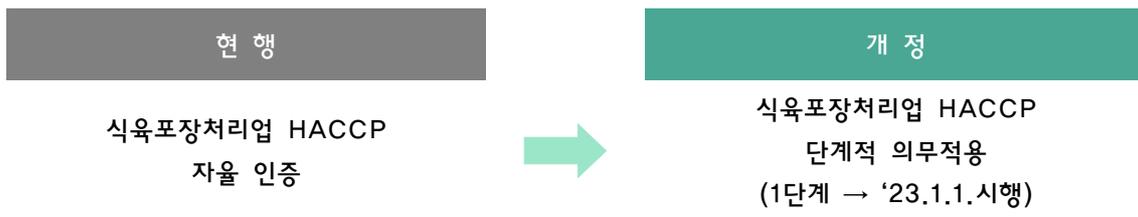
축산과 (☎ 063-560-2619)

- ▣ '20년 매출액 기준 20억원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축산물 안전관리기준(HACCP)이 의무적용 시행됩니다.

(추진내용)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2020년도 매출액 기준 20억원 이상인 업체는 2023년 1월 1일 처음으로 의무 적용 됨

(조치사항) HACCP 의무적용 시기를 위반(미인증)하여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식육포장처리업 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시행

- ▶ 추진배경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단계적 의무적용 시행
- ▶ 주요내용 : 의무적용 시기를 연매출('20년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 의무적용 업체가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면 행정처분 대상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7.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축산과 (☎ 063-560-2629)

▣ 사람과 동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2023년 4월 27일부터 반려견 및 맹견 사육에 관한 안전관리 의무사항이 강화됩니다.

(추진목적)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 조치해야 합니다.

(강화사항)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맹견 안전조치 위반 과태료 : 1차)100만원 → 2차)200만원 → 3차)300만원

| 현행 | 개정 |
|---|--|
| <p>맹견의 출입금지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장소 | <p>반려견 소유자의 의무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자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치 <p>맹견의 출입금지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장소 |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 ▶ 추진배경 : 개물림 사고 발생 등에 따른 사람과 동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한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 ▶ 주요내용 : ①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
②맹견 출입금지 장소 확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추가)
- ▶ 시행일 : 2023년 4월 27일

8. 꿀벌 구제약품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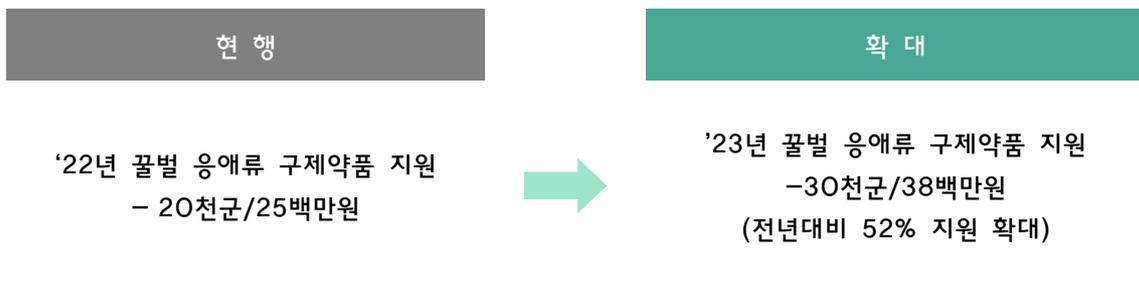
축산과 (☎ 063-560-2619)

▣ 꿀벌 응애류 피해 예방을 위한 구제약품을 확대 지원합니다.

(피해현황) '21/'22년 월동 및 개화기 꿀벌 피해 급증

- 피해원인 : 이상기온, 꿀벌 응애류, 말벌 등

(지원내용) 꿀벌 응애류 구제약품 지원 확대하여 질병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양봉농가 경영 안정화 도모



꿀벌 구제약품 지원 확대

- ▶ 추진배경 : 월동 및 개화기 꿀벌 피해 예방을 위한 구제약품 지원 확대
- ▶ 주요내용 : 꿀벌 구제약품 3종 지원
 - 응애류 : 30천군/38백만원(전년대비 52% 증가)
 - 노제마 : 21천군/23백만원(전년 동일)
 - 낭충봉아부패병 : 15천군/20백만원(전년 동일)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9.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유도등 설치

해양수산과 (☎ 063-560-2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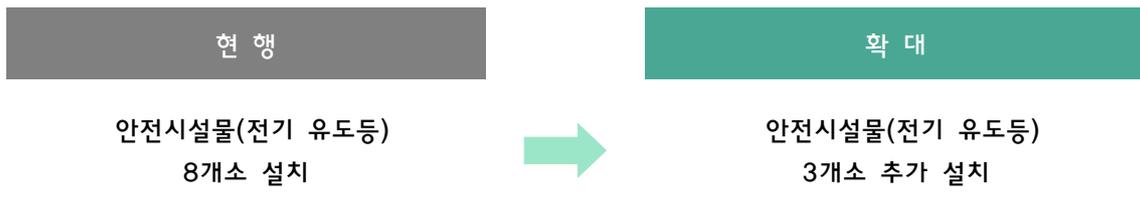
▣ 갯벌에서의 야간 어업활동 시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시설물이 설치됩니다

- (추진목적) 어업인들의 야간 고립사고 발생 위험지역에 안전시설물(전기 유도등)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어업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모

(사업기간) 2023. 1. ~ 10.

(사업위치) 어업인 주출입구 육지 부근 일원
(해리면 동호, 부안면 선운, 반월)

(총사업비) 50백만원(도비 15, 군비 35)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유도등 설치사업

- ▶ 추진배경 : 야간 어업활동 시 안전시설물 구축을 통해 어업인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 ▶ 주요내용 : 고창군 3개소 전기 유도등 지원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10.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해양수산과 (☎ 063-560-2733)

▣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수산식품 가공설비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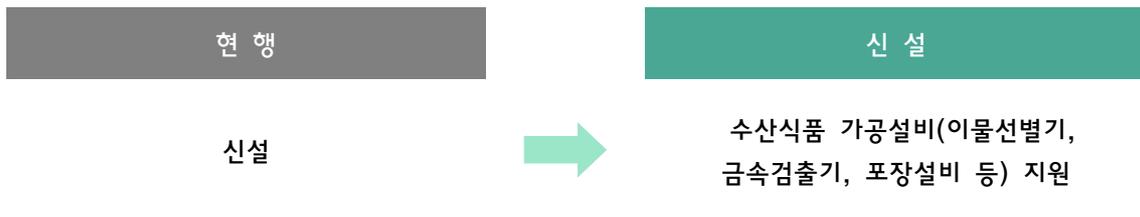
- (추진목적)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해 식품분야 4차 산업과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위생·안전 등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관내 가공 및 수출업체

(지원내용)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지원

※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

(사업비) 217백만원(국비 65, 도비 19.5, 군비 45.5, 자담 45.5)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 ▶ 추진배경 : 관내 가공 및 수출업체에 수산식품 가공설비를 지원하여 고창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환경 조성을 통해 소득향상 도모
- ▶ 주요내용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지원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1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대출 이차보전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 063-560-8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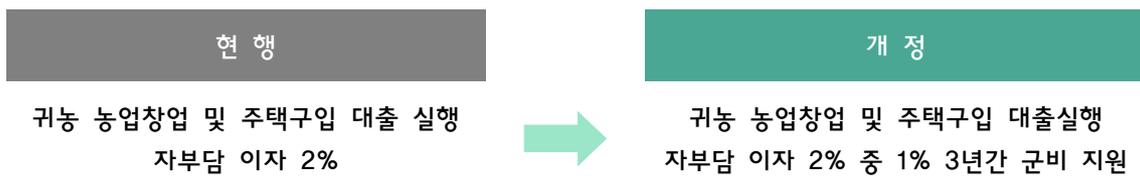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대출 이차 1% 지원합니다.

- (추진목적) 귀농 초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에게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지역 정착률 제고 및 신규 귀농인 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고창군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2023년 이후 농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정책자금 대출실행자 중 이차(고정금리)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

(지원내용) '23년 이후 은행에 납부한 자부담 이차 2% 중 1% 3년간 균비 지원(최대 3백만원/연)

(지원시기) 대출실행 다음 연도부터 상하반기 연 2회 지급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대출 이차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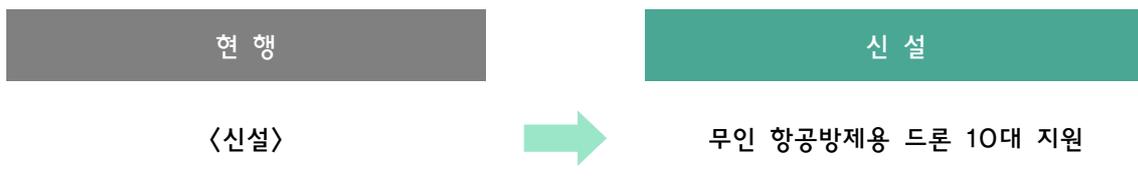
- ▶ 추진배경 : 귀농인의 농업창업 초기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은 기간 정책자금 대출 이차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정착 및 인구 유입 증대
- ▶ 주요내용 : '23년 이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정책자금 대출실행 자부담 이차 2% 중 1% 3년간 균비 지원(최대 3백만원/연)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12. 마을 드론 방제 확대 지원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063-560-8842)

■ 기존 방제 대비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에 따른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드론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추진목적) 벼 병해충 항공방제로 방제 효율성 제고 및 고품질 쌀 생산을 도모하여 농가소득 향상
(사업대상) 마을방제사업단 등
(사업규모) 드론 10대(350백만원)
(재원비율) 군비 60%, 자부담 40%
 - 군비 산출내역 : 35,000,000원 × 10대 × 60% = 210백만원
 - 자부담 산출내역 : 35,000,000원 × 10대 × 40% = 140백만원



마을 드론 방제 확대 지원

- ▶ 추진배경 : 벼 재배 농업인의 고령화 및 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방제 문제 해결
- ▶ 주요내용 : 무인 항공방제를 위한 방제용 드론 지원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13. 농작업 대행서비스 상시 지원으로 확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063-560-8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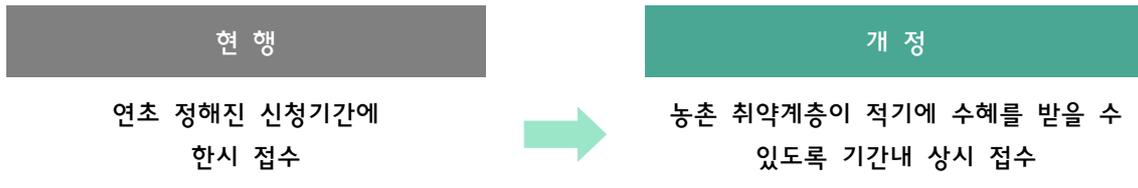
■ 농작업 대행서비스 접수기간이 상시접수로 변경됩니다.

- (추진목적) 영농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도록 야외 농작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운영으로 영농문제 해결

(지원대상) 경지면적 3,000㎡(1ha)이하 70세이상 고령 농업인, 여성 1인 농업인, 귀농귀촌 3년 이내 농업인

(지원내용) 밭 경운 및 정지작업 등 농작업 대행

(지원시기) 2023. 3. ~ 5.



농작업 대행서비스 상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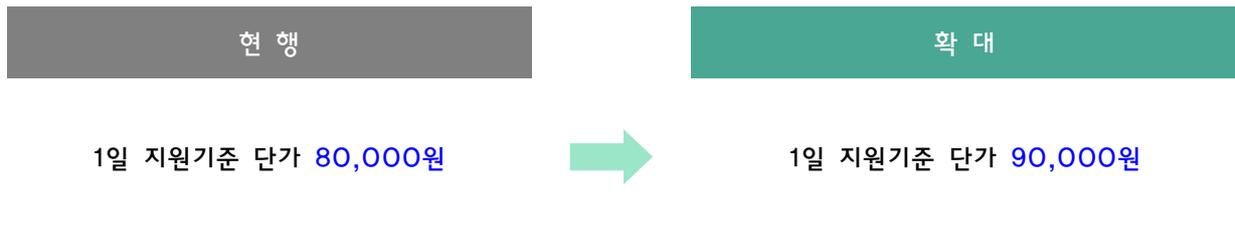
- ▶ 추진배경 : 영농철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중지되는 등 농촌인력 부족 및 야외 농작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인력 부족 현상 발생
- ▶ 주요내용 : 23년 이후 농촌 취약계층이 적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접수
- ▶ 시 행 일 : 2023년 3월

14.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단가 상향

농업정책과 (☎ 063-560-2522)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단가가 상향됩니다.

- (추진목적)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대행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겸업농어업인 포함
- (지원내용)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의 농가도우미 임금의 90% 수준을 예산범위 내 지원(70일이내)
- (지원단가) 1일 지원기준 단가 90,000원(도비 25% 군비 65% 자부담 10%)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단가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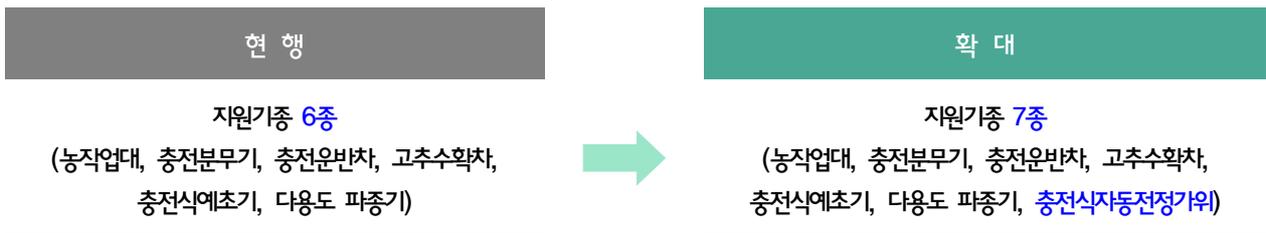
- ▶ 추진배경 : 농촌지역 평균임금·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지원단가 인상
- ▶ 주요내용
 - 1일 지원기준 단가 80,000원 → 90,000원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15.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기종 확대

농업정책과 (☎ 063-560-2516)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기종이 확대됩니다.

- (추진목적)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역할 증가에 따른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포함
(지원내용) 농작업 편의장비 7종(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 파종기, 충전자동전정가위)구매 지원
(지원단가) 500천원 이내/대(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기종 확대

- ▶ 추진배경 : 수요조사결과 반영 및 지원기종 다양화
- ▶ 주요내용 : 지원기종 7종(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 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추가>)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16.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대상 확대

농업정책과 (☎ 063-560-2524)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대상자 확대됩니다.

- (추진목적)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도모 및 문화활동 기회 제공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이상~만75세 미만인 여성농어업인
 -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 직업종사자 포함
(단, 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 (지원내용)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을 통한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 등 지원
- (지원단가) 1인 연간 지원액 150,000원(도비 26% 군비 61% 자부담 13%)

| 현 행 | 확 대 |
|---|----------------|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만 신청 가능 | 삭제(신청자격 기준 완화)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대상 확대

- ▶ 추진배경 : 신청자격 기준 완화
- ▶ 주요내용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합산)이 50,000㎡ 이상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가구도 신청 가능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17. 농업용 친환경 전기운반차 지원 시행

농업정책과 (☎ 063-560-2537)

■ 비료·작물 등의 운반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 농기계 지원으로 농업인의 효율적인 농작업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용 친환경 전기운반차를 지원합니다.

- (추진목적) 농작업에 불리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에게 비료·작물 등의 운반을 위한 친환경 전기운반차 지원으로 농업환경 개선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 기여
(지원대상) 2022. 1. 1. 이전부터 고창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만65세이상)
(지원내용) 농업용 친환경 전기운반차 구입 시 구입비 지원

| 현행 | 확대 |
|------|---|
| <신설> | 사업규모 : 42대 지원단가 : 7백만원/대(군비 50%, 자담 50%) |

농업용 친환경 전기운반차 지원 시행

- ▶ 사업기간 : 2023. 1. ~ 12.
- ▶ 사업규모 : 42대
- ▶ 사업비 : 294,000천원(군비 50% 자부담 50%)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18. 전략작물 직불금 시행

농업정책과 (☎ 063-560-2527)

▣ 국가 식량 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을 시행합니다.

- (추진목적) 국가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 도모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기존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과 작부체계를 연계하여 이모작 여부에 따라 직불금 차등 지급

| 현행 | 신설 |
|------|--|
| <신설> | (동계) 50만원/ha - 대상작물 : 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하계) 100만원/ha - 대상작물 : 가루쌀, 하계콩 (이모작) 250만원/ha - 대상작물 : 동계(2) 밀 조사료 + 하계(2) 가루쌀 하계콩 |

전략작물 직불금 시행

- ▶ 추진배경 : 밀·콩 등 작물이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면, 쌀은 과잉생산되는 구조에서 자급률이 낮은 밀·콩 등의 전략생산 확대 필요성과 쌀가격 하락 및 시장격리비용 절감
- ▶ 주요내용
 - 기존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과 작부체계를 연계하여 이모작 여부에 따라 직불금 차등 지급
- ▶ 사업량 : 1,247ha
- ▶ 사업비 : 865백만원(국비)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19.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시행지침 개정

농업정책과 (☎ 063-560-2526)

▣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시행지침이 개정됩니다.

- (추진목적)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도모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지급 대상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22년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 '17 ~ '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쌀직불)
- '98. 1. 1. ~ '00. 12.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
(밭직불)
- '12. 1. 1. ~ '14. 12. 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토지
(조건불리직불)
- '03. 1. 1. ~ '05. 12. 31.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23년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 1719삭제 → 기준연도 충족 필요
- 1단계 : 최근 농지이용여부 조사
- 2단계 : 1단계 충족+'16년 이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이력
- 3단계 : 1단계 충족+토지대장(아력정보 포함) 및
포털서비스맵 조사
- 4단계 : 1단계 충족하거나 기준연도를
확인할 수 없는 농지인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시행지침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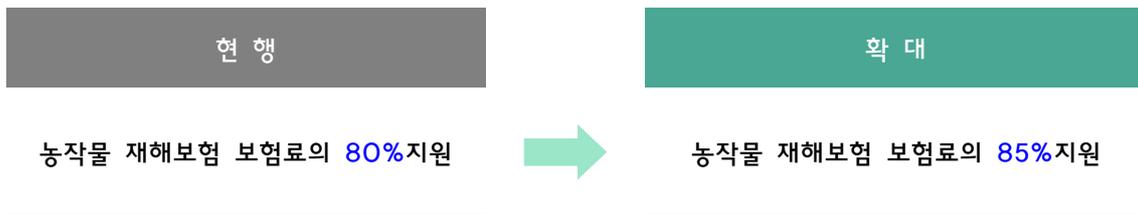
- ▶ 지원단가 : 소농직불금(1,200천원/농가당), 면적직불금(구간별 단가적용)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20. 농작물 재해보험 보조비율 상향 지원

농업정책과 (☎ 063-560-2528)

▣ 농작물 재해보험 보조금 지원율이 상향됩니다.

- (지원대상)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작물) 45개 품목(벼, 사과, 배, 고추 등)
※ 전국 67개 품목
(지원율) 80% 기본지원 + 5% 추가지원 = 보험료의 85%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보조비율 상향 지원

- ▶ 추진배경 : 지원 확대를 통해 보험 가입률을 확대하여 태풍·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하도록 함
- ▶ 주요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의 85% 지원
※ '22년 대비 지원율 5% 증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21. 시설하우스 사업 지원단가 인상

농업정책과 (☎ 063-560-2532)

■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관내 농업인의 편의 도모를 위한 시설하우스 사업 지원단가가 인상됩니다.

- (대상사업)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및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지원단가) 단동 하우스 : 33,000원/㎡
연동 하우스 : 130,000원/㎡

| 현 행 | 확 대 |
|--|---|
| 단동 하우스 : 22,000원/㎡ 연동 하우스 : 96,000원/㎡ | 단동 하우스 : 33,000원/㎡ 연동 하우스 : 130,000원/㎡ |

시설하우스 사업 지원단가 인상

- ▶ 추진배경 : 하우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단가 인상
- ▶ 주요내용
 - 지원단가 : 단동 하우스(33,000원/㎡), 연동 하우스(130,000/㎡)
 - 대상사업 :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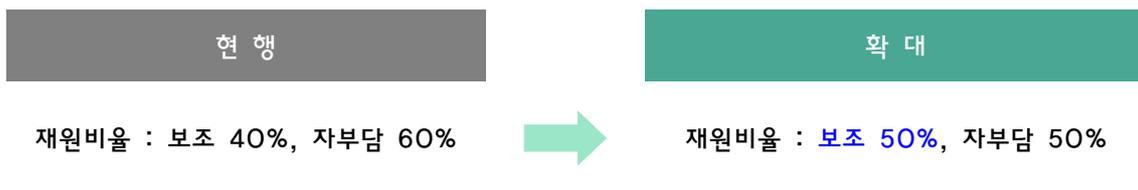
22.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보조비율 상향 조정

농업정책과 (☎ 063-560-2528, 2532, 2533)

□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보조비율이 상향됩니다.

■ (대상사업) 12개 사업

- 원예·특작 생산단지 지원사업(8개 품목),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하우스 작물 재배용 수정별 지원사업, 고추 건조기 지원사업
 -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사업비) 2,618백만원(군비 1,309, 자부담 1,309)
(재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보조비율 상향 조정

- ▶ 추진배경 :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사업 보조비율 상향
- ▶ 주요내용 :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보조비율 40%→50%로 상향 지원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23. 농촌인력 수급확대 추진

농업정책과 (☎ 063-560-2467)

- 계절적으로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인원이 확대됩니다.

| 현 행 | 확 대 |
|--|---|
| 수급인원 : 253명 (MOU체결 215,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23, 국내체류 15) | 수급계획 : 600명 (MOU체결 300,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250, 공공형 계절근로 50) |

농촌인력 수급확대 추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프로그램]

- ▶ 추진목적 :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여 필요농가에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일손부족 완화
- ▶ 사업기간 : 2023. 1. ~ 12.
- ▶ 수급방안 : MOU체결,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및 친척(4촌이내) 초청
- ▶ 사업대상 : 법무부 배정 승인을 받은 농가 및 법인
- ▶ 시 행 일 : 2023년 1월

[권역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

- ▶ 추진배경 : 권역별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설치하여, 특정시기에 1일 단위 단기간 농작업 인력수요가 필요한 소규모·영세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제공
- ▶ 사업기간 : 2023. ~ 2026.
- ▶ 사업규모 : 5개소(지역농협) ※개소당 : 50명
※ '23년(1개소)→ '24년(3개소)→ '25년(4개소)→ '25년(5개소)
- ▶ 사 업 비 : 1,235백만원(국비 130, 도비 39.2, 군비 1,065.8)
-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 시 행 일 : 2023년 6월

24. 행복콜택시 운행 확대

농촌활력과 (☎ 063-560-2705)

▣ 행복콜택시 운행 마을이 확대됩니다.

- (추진목적)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마을에 제공하는 행복콜택시 대상마을 운행 확대로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및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지원대상) 13개 읍면 153개 마을 주민
(지원내용) 마을회관~읍·면소재지까지의 택시비 지원(주민부담금 1,000원 제외)

| 현행 | 확대 |
|---|--|
| 마을회관~최단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0.7km 이상인 마을 ▶ 13개 읍면 94개 마을 | 마을회관~최단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 ▶ 13개 읍면 153개 마을 |

행복콜택시 운행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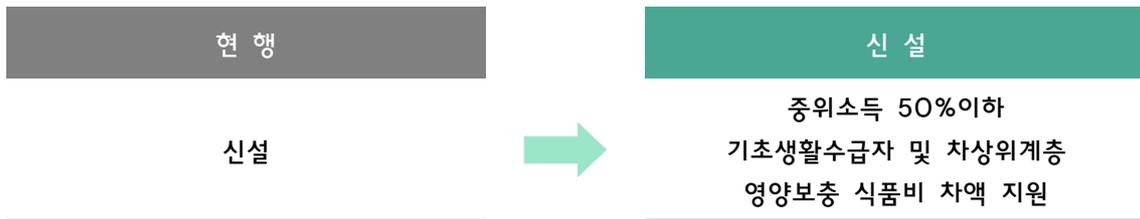
- ▶ 추진배경 : 운행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운행기준 완화를 통한 행복콜택시 마을 수 확대(94개 마을→153개마을)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25.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시행

농촌활력과 (☎ 063-560-2737)

▣ 저소득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 보충 지원,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 구축을 위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 (지원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급형태) 전자바우처(카드) / 매월 1일 충전, 월별 미사용 시 소멸
(월지급액) 월 4만원(1인 가구 기준)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사업내용)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대상 영양보충 식품비 차액 지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 ▶ 추진배경 :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개선과 계층간 영양(건강)불균형 완화 및 농산물 구매지원으로 국민 영양 안전망구축 및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3. 4.~ 12.
 - 구매품목 : 국내산 과일, 채소, 흰 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 지급형태 : 전자바우처(카드)/매월 1일 충전, 월별 미사용 시 소멸
 - 사업내용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대상 영양보충 식품비 차액지원
- ▶ 시행일 : 2023년 4월 1일

26.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축산과 (☎ 063-560-2616)

▣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전환 추진됩니다.

■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지원대상) 만 6~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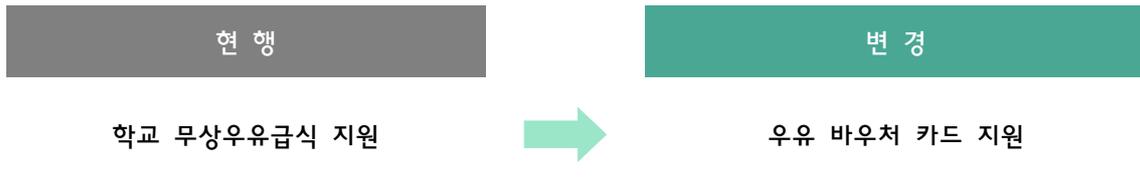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형태) 월 15,000원 ‘바우처(카드)’ 제공

* 사용처 : 고창군 內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

(지원율) 100%(국비 60% 도비 10% 군비 30%)

(지원기간) 2023년 3월 ~ 12월(10개월)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전환 추진

- ▶ 추진배경 : 수혜자의 유제품 선택권 확대 등을 통한 만족도 제고와 학교 우유 급식 미실시 학교 및 제도권 외 청소년 등으로 지원 범위 확대
- ▶ 주요내용 : 무상우유 대상자들에게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및 가공 유제품(국산 원유 50%이상 함유)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
- ▶ 시행일 : 2023년 3월

IV. 세제·부동산·행정

1.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67
2.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 68
3.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69
4. 건축물 원시취득 과세표준 개정 70
5. 무상취득(상속제외)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도입 71
6. 유상거래 과세표준 기준 변경 72
7. 쉽고 빠른 규제개혁신고센터 상시 운영 73

1.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재무과 (☎ 063-560-2477)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적으로 적용합니다.

-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처분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중과세율로 재신고하면 조세회피의도가 없으므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종전주택 미처분 ※중과세율적용(8%) | 별도 신고절차 없음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일 0.022%) | 처분기간 경과후 60일 이내 신고 없음 없음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처분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가 없어 추후 신고 또는 경정시 중과세율 적용 외에 가산세 추가부담**

*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소재시 3년,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2년

** 중과세율(8%)을 적용한 총세액에서 既 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를 모두 합한 세

- ▶ 주요내용 :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처분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그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로 다시 신고하면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2.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

재무과 (☎ 063-560-2477)

▣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 인구감소지역내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로 사업장이 들어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구 분 | 현 행 | 신 설 |
|----------------------------|-----------|-----------------------|
| 인구감소 지역 (전국 89개, 전북10개) | 창업기업 | 처분기간 경과후 60일 이내 신고 |
| | 사업장 신설·이전 | 신설 없음 |
| | 사업전환 기업 | 없음 |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

- ▶ 추진배경 :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신설
 - 창업기업 및 사업장신설·이전 :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 3년간 50%
 - 사업전환 :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3.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재무과 (☎ 063-560-2489)

▣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 부담을 줄였습니다.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구 분 | | 현 행 | 신 설 |
|---------------------|------|-------|---|
| 개인지방 소득세 분할납부 | 대상 | <신 설> | 종합·퇴직소득분 세액이 1백만원(국세 10%) 초과시 ※ 분납금액 시행령 위임 |
| | 분납기간 | <신 설> | 2개월 이내 |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 ▶ 추진배경 : 국세인 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가 허용되지 않아 납세자 불편을 초래
- ▶ 주요내용 :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2개월 이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4. 건축물 원시취득 과세표준 개정

재무과 (☎ 063-560-2477)

▣ 원시취득 과세표준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됩니다.

- (적용원칙) 부동산 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며, 사실상 취득가격은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적용방식과 동일 개인이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더라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입증되면 적용가능
 - (적용예외)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함
 - * ‘확인할 수 없는 경우’란 취득의 경위, 제출서류의 미비 등을 고려할 때 신고가액인 사실상 취득가격에 대한 객관성을 상실한 경우
(주의사항) 세부담 회피를 위해 과소신고하는 경우 향후 정당한 취득가액 확인 시 가산세 등 추가 불이익이 발생
- ※ 차세대 시스템 도입, 과세자료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연계 확대로 취득비용 확인방법 강화 예정

| 현 행 | 확 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신고한 가액● (예외) 시가표준액- 개인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사실상의 취득가격● (예외) 시가표준액 |

건축물 원시취득 과세표준 개정

- ▶ 추진배경 :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며, 사실상 취득가격은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적용방식과 동일
- ▶ 주요내용 : 개인이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더라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입증되면 적용 가능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5. 무상취득(상속제외)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도입

재무과 (☎ 063-560-2477)

▣ 무상취득(상속제외)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도입되었습니다.

- (도입배경)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실질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시가(時價)수준으로 과세
(적용예외) 상속 취득, 1억원 이하의 부동산 증여취득은 종전과 같이 시가표준액 적용가능

| 현 행 | 확 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표준 : 취득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증여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 상속 취득, 1억원 이하의 부동산 증여취득은 종전과 같이 시가표준액 적용 가능● (시가인정액 적용) 아래의 순서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ol style="list-style-type: none">① (1순위) 취득재산의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② (2순위) 취득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위 ①,②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취득일 전 2년 이내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 가능③ (3순위) ①,②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 |

무상취득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도입

- ▶ 추진배경 : 공평과세 실현과 실질가치 반영 강화, 국세(증여세)와의 적합성 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는 경우 시가 수준으로 과세
- ▶ 주요내용 :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종전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 하였으나, 23년부터 시가인정액으로 전환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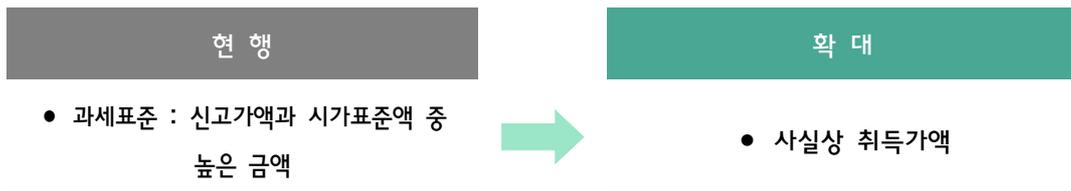
6. 유상거래 과세표준 기준 변경

재무과 (☎ 063-560-2477)

▣ 개인, 법인 모두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됩니다.

- (적용원칙)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함
- (적용예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취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주의사항) 세부담 회피를 위해 과소신고하는 경우 향후 정당한 취득가액 확인 시 가산세 등 추가 불이익이 발생

※ 차세대 시스템 도입, 과세자료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연계 확대로 취득비용 확인방법 강화 예정



유상거래 과세표준 기준 변경

- ▶ 추진배경 : 부동산등을 유상거래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으로 함
- ▶ 주요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토록 하고 있어 해당 가격이 비록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등 부적정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적용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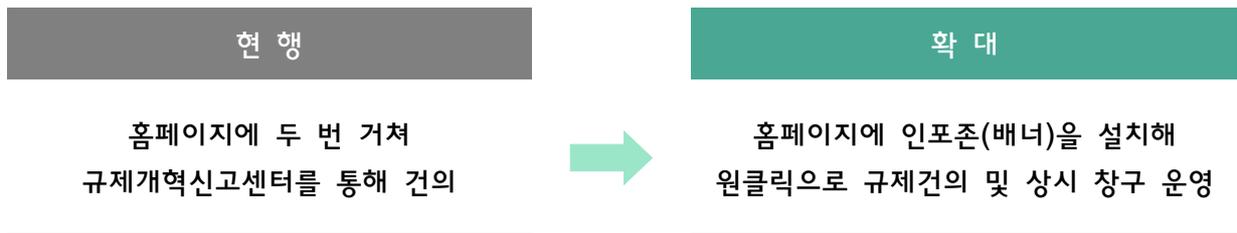
7. 쉽고 빠른 규제개혁신고센터 상시 운영

기획예산실 (☎ 063-560-2256)

▣ 일상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 규제개혁신고센터 상시 운영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 (추진목적) 군민과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대 상) 고창군민
(신고방법)

- 온 라 인 : 군 홈페이지에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수 있는 인포존(배너) 설치
- 오프라인 : 고창군 규제개혁신고센터 상시 창구 운영



규제개혁신고센터 상시 창구 운영

- ▶ 접수장소 : 고창군청 기획예산실(2층) 대외협력팀
-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인포존(배너), 전화, 방문, 우편 등
- ▶ 연 락 처 : 063-560-2256 / sdc9801@korea.kr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V. 문화·체육·관광

1.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운영 75
2. 유네스코 세계유산 투어 운영 76
3. 반려동물 문화·관광산업 육성 77
4.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78
5.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79

1.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운영

관광산업과 (☎ 063-560-8598)

▣ 유네스코 5관왕에 빛나는 세계유산도시 고창이, 2023년을 방문의 해로 지정합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능동적 대응으로 고창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관광의 선도지역으로서 계기를 마련합니다.

(운영기간) 2023. 1. ~ 12.

(장 소) 고창군 전역

(내 용) 고창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관광인프라 구축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운영

▶ 추진방향

-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한 명품관광 고창 브랜드화로, 1,000만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공직자와 전 군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구축

▶ 주요 사업내용

-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각종 이벤트 개최
- 유네스코 세계유산 시티투어 및 팸투어 및 체험프로그램 콘텐츠 강화
- 초중고 특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등 홍보 연계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풍요롭고 찬란한 세계유산도시 고창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2. 유네스코 세계유산 투어 운영

관광산업과 (☎ 063-560-2949)

▣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시티투어를 운영합니다.

- 우리군의 우수한 지역문화 특성화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우리 지역의 세계유산과 관광명소를 홍보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순환형 시티투어를 운영합니다.

(운영기간) 2023. 3. ~ 11.

(장 소) 고창군 주요 관광지

- 석정온천관광지 ~ 고창읍성 ~ 고인돌유적지 ~ 운곡람사르습지 ~ 선운산 ~ 람사르 갯벌센터 ~ 상하농원 연계 관광 상품 운영

(내 용) 고창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관광인프라 구축

유네스코 세계유산 시티투어

▶ 기 간 : 2023. 3. ~ 11.

▶ 장 소 : 고창군 주요 관광지

- 석정온천관광지 ~ 고창읍성 ~ 고인돌유적지 ~ 운곡람사르습지 ~ 선운산 ~ 람사르 갯벌센터 ~ 상하농원 연계 관광 상품 운영

▶ 운영횟수 : 60일 정도(매주 토/일요일 예정)

※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주변 분들에게 많은 홍보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23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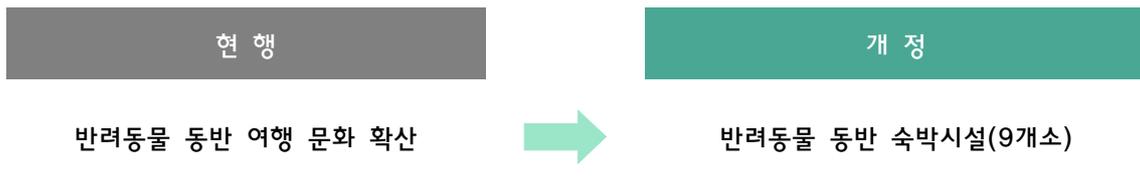
3. 반려동물 문화 · 관광산업 육성

축산과 (☎ 063-560-2629)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 ·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을 지원 · 조성합니다.

- (추진내용)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어촌 숙박시설을 지원하여 반려동물 동반 농어촌 관광 활성화

*농어촌 숙박시설 9개소에 반려동물 숙박 가능한 펫인테리어, 야외놀이터 및 세족시설 설치 지원



반려동물 문화 · 관광산업 육성

- ▶ 추진배경 :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이 가능한 숙박시설 필요
- ▶ 주요내용 : 관내 농어촌 숙박시설에 펫인테리어, 야외놀이터, 세족시설 등 설치 지원으로 9개 사업장에 사업 추진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4.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체육시설사업소 (☎ 063-560-8911)

■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확대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선전한 여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 지원
- (지원대상) 만 5세 ~ 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지원내용) 12개월간 1인당 매월 95천원 범위내 수강료 지원(총 1,140천원)

| 현 행 | 확 대 |
|---|---|
| ① 1인당 매월 85천원 지원 ② 연간 10개월 이상 ③ 수혜인원 108명 | ① 1인당 매월 95천원 지원 ② 연간 12개월 이상 ③ 수혜인원 161명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 ▶ 추진배경 : 저소득층 유·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한 스포츠 참여 및 건강증진 도모
- ▶ 주요내용 : 만5~18세 유·청소년에게 1인당 매월 95천원 범위내 수강료 지원 (최대 12개월 지원)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5.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체육시설사업소 (☎ 063-560-8911)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확대 지원합니다.

- 스포츠 소외 계층인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위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만 19 ~ 64세 장애인
 - 비저소득 장애인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12개월간 1인당 매월 95천원 범위내 수강료 지원(총 1,140천원)

| 현 행 | 확 대 |
|------------------|------------------|
| ① 1인당 매월 85천원 지원 | ① 1인당 매월 95천원 지원 |
| ② 연간 10개월 이상 | ② 연간 12개월 이상 |
| ③ 수혜인원 5명 | ③ 수혜인원 22명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 ▶ 추진배경 : 장애인 대상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으로 스포츠 향유기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
- ▶ 주요내용 : 만 19~64세 장애인에게 1인당 매월 95천원 범위내 수강료 지원 (최대 12개월 지원)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VI. 환경·녹지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81
2.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82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4등급까지 확대 83
4.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84
5. 오수처리시설 준공 수질검사대상 확대 85
6. 2023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시행지침 개정 86
7.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88
8. 산림내 입목벌채 제도 개선 89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환경위생과 (☎ 063-560-2917)

■ 1회용품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종이컵, 빨대 및 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이 추가로 사용 규제됩니다.

-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및 준수사항 단계적 확대
 - 대상확대 :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 추가
 - 준수사항 강화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

| 현 행 | 확 대 |
|---|---|
| <p>①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1회용 컵,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합성수지 수저·포크·ナイフ, 비닐식탁보 사용금지</p> <p>② 도·소매업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p> <p>③ 대규모점포 1회용 봉투 및 쇼핑백</p> <p>④ 체육시설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p> | <p>①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기존 품목 및 1회용 종이컵, 봉투 및 쇼핑백,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금지</p> <p>②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p> <p>③ 대규모점포 기존 품목 및 1회용 우산 비닐 사용금지</p> <p>④ 체육시설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사용금지</p> |

1회용품 줄이기 확대

- ▶ 추진배경 :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증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컵, 봉투,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 증가
- ▶ 주요내용 : 업종별 1회용품 적용대상 확대 및 준수사항 강화
- ▶ 시 행 일 : 2022년 11월 24일(계도), 2023년 11월 24일(의무)

2.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종합민원실 (☎ 063-560-2408)

환경위생과 (☎ 063-560-2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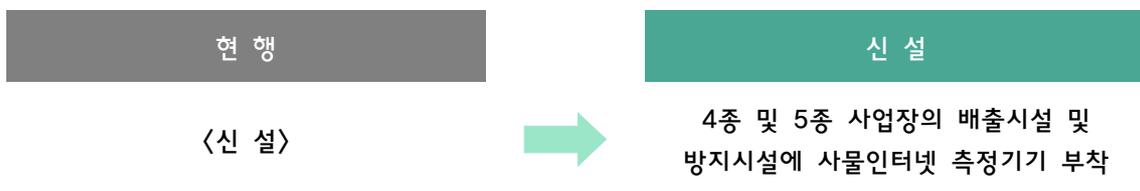
▣ 4·5종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 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추진목적)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 확인 및 대기질 개선
(부착대상) 4·5종 대기배출시설 사업장(도 : 산단, 시군 : 산단 외)
(주요내용) 연간 대기오염물질이 10톤 미만으로 배출되는 신규 및 기존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하고 그린링크(www.greenlink.or.kr)에 사업장 및 측정기기 정보를 등록한 후 관할 지자체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를 해야함

※ 1 ~ 3종까지의 사업장을 4·5종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및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함

※ 다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로 유예기간은 아래 표와 같음

| 구 분 | 가동개시일자 | 부착시기 | 비고 |
|-------------|---------------------|-----------|----|
| 기존 4·5종 사업장 | ‘22.5.2일 이전 | ‘25.6.30. | |
| 신규 4종 사업장 | ‘22.5.3 ~ ‘23.6.30. | ‘23.6.30. | |
| 신규 5종 사업장 | ‘22.5.3 ~ ‘24.6.30. | ‘24.6.30. | |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 ▶ 추진배경 : 4·5종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 확인 및 대기질 개선
- ▶ 주요내용 : 4·5종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도 : 산단, 시군 : 산단 외)
- ▶ 시 행 일 : 2023년 6월 30일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4등급까지 확대

환경위생과 (☎ 063-560-2876)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됩니다.

- (추진목적)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의 저공해화
(대상시설) 4등급·5등급 경유차량
(추진내용)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기존에는 5등급 경유차만 해당하였으나,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까지* 지원대상 확대할 예정
 - 또한, 그간 지원해왔던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5등급 경유차는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를 지원할 계획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2006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경유차

| 현 행 | 확 대 |
|--|---|
| - 조기폐차 지원 : 5등급 경유차만 - 저감장치 부착지원 : 5등급 경유차만 | - 조기폐차 지원 : 4등급·5등급 경유차 - 저감장치 부착지원 : 5등급 경유차만 |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 ▶ 추진배경 : 미세먼지 주요발생원인 이동오염원의 배출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 확대
- ▶ 주요내용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 시행(2023~2026)
 - 5등급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지원은 2023년까지만 지원 예정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4.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환경위생과 (☎ 063-560-2875)

종합민원실 (☎ 063-560-2408)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2.12.28)에 따라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됩니다.

- (추진목적)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여 국민 건강 보호 및 청정 대기환경 보전

(대상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 아세트알데하이드, 이황화메틸, 아닐린, 벤지딘, 히드라진, 프로필렌옥사이드, 베릴륨, 에틸렌옥사이드

(추진내용) 배출허용기준에 없던 특정대기오염물질 8종을 신설

※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2개 물질(폴리염화비페닐, 석면)은 사용금지 물질로 기준설정 없음

현 행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배출허용기준 항목 25종



확 대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배출허용기준 항목 33종
<기준 신설 8항목>
아세트알데하이드, 이황화메틸,
아닐린, 벤지딘, 히드라진,
프로필렌옥사이드, 베릴륨,
에틸렌옥사이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 ▶ 추진배경 : 국민 건강 보호 및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강화
- ▶ 주요내용 :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5. 오수처리시설 준공 수질검사대상 확대

종합민원실 (☎ 063-560-2408)

▣ 1일 처리용량 3m³을 초과하는 오수처리시설은 준공검사 시 방류수 수질검사가 의무화됩니다.

- (추진목적) 1일 처리용량 50m³미만의 오수처리시설 제조제품 미비점을 개선·보완 (검사대상) 1일 처리용량 3m³을 초과하는 오수처리시설

(주요내용) 성능이 미달되는 오수처리시설 제품의 초기 개선을 위해 1일 처리용량 3m³을 초과하는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시 방류수 수질검사 의무화

※ 준공으로 적합통지 받은 후 110일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창군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담당자가 방류수를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 (사용 시작 지연 시 고창군 오수처리시설 인허가 담당자에게 통보 후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70일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질검사)

※ 수질검사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하수도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대상에 해당

현 행

오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등록·제조한 제품을 설치한 경우로서 50m³/일 미만 시설은 방류수 수질검사 제외



개 정

오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등록·제조한 제품을 설치한 경우로서 3m³/일 이하 시설은 방류수 수질검사 제외

오수처리시설(3m³/일 초과) 준공 시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

- ▶ 추진배경 : 수질기준 위반사례가 빈번한 성능미달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제조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수질검사 대상 확대
- ▶ 주요내용 : 처리용량 3m³/일을 초과하는 오수처리시설 준공 시 방류수 수질검사 의무화
- ▶ 시 행 일 : 2022년 12월 9일

6. 2023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시행지침 개정

산림공원과 (☎ 063-560-2591)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분야(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지침이 2023년도 일부 변경됩니다.

- (추진목적)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집단지화·현대화를 지원하여 임산물 생산성 및 품질 향상
- (지원대상)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자격 확인 필요
- (대상사업)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외 9개 사업(소액 및 공모사업)
- (보조비율)
 - 소액사업 : 국비 20%, 지방비 30%, 읍자 30%, 자부담 20%
 - 공모사업 : 내역사업별 보조비율 참고

| 구 분 | 현 행 | 변 경 |
|-------------------|--|---|
| ○ 지원요건 공통사항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 -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 생산자단체에 대하여는 우선지원 - <신설> | 의무자조금 도입품목 - 자조금 단체에서 고지한 의무 거출금을 납부한 임업인,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는 우선지원 - 자조금 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
|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신청기간) - 전년도 1~2월 | (신청기간) - 전년도 11월초~12월초 |
|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 ▷ 꽃송이버섯 자목 구입 (지원 단가) - 본당 금액 : 1,000원 (W 30cm × L 2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가능 | ▷ 꽃송이버섯 자목 구입 (지원 단가) - 본당 금액 : 1,000원 (W 15cm이상 × L 15cm이상)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가능 |
|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 ▷ 산림버섯재배시설 (지원 내용) * 판넬형 이상 신축은 불가하고, 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가능 | ▷ 산림버섯재배시설 (지원 내용) * 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가능 * 판넬형 신축은 지원한도 84백만원/건 이하 |
| | ▷ 관수·관정시설(기타 품목) (지원 한도) - 관정(6인치, 일반형) : 9,400천원/공 | ▷ 관수·관정시설(기타 품목) (지원 한도) - 관정(6인치, 일반형) : 9,500천원/공 |

▷ 대추비가림시설
(지원 한도)
㎡당 20천원 이내

▷ 덩굴류 유인시설
(지원 한도) 없음

▷ 감시시설(보호울타리)
(지원 한도)
- 전기 울타리 : 1,700천원/0.5ha
- 철조망 : 7,400천원/0.5ha

▷ 생산장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 굴착기는 단기소득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하며, 면허를 필요로 하는 굴착기의 경우 면허 구비자

(지원한도)
총사업비 기준 지원한도 40백만원/대 이하 지원(추가비용 자부담)

▷ 대추비가림시설
(지원 한도)
㎡당 25천원 이내
* 대추 이외 비가림 시설이 필요한 임산물(머루 등) 가능

▷ 덩굴류 유인시설
(지원 한도) ㎡당 10천원 이내

▷ 감시시설(보호울타리)
(지원 한도) 40천원/m

▷ 생산장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 굴착기는 단기소득 임산물 품목별 재배면적 기준 이상인 자에 한하며, 면허를 필요로 하는 굴착기의 경우 면허 구비자
* 품목별 굴착기 지원 면적기준
- 수실류 : 15ha
- 약용·약초·산나물류 : 10ha
- 관상산림식물류(조경수) : 5ha

(지원한도)
총사업비 기준 지원한도 규격별 차등 지원(추가비용 자부담)
- 장비중량 3.5톤 미만 : 40백만원/대
- 장비중량 3.5톤 이상 : 60백만원/대

(중요재산 부기등기)
- 굴착기 기계장비 운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구매일로부터 7년간) 동안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처분 금지 설정(부기)

(지원 내용)
* 가공·유통 시설에 임산물 공동가공 시설 추가

(지원구분 및 한도)
- 화물차량 : 국비 3.6백만원/건 (총사업비 18백만원)이하
- 냉동·장탐차 : 국비 5백만원/건 (총사업비 25백만원)이하

○ 임산물 클러스터 (공모사업) <신설>

(지원구분 및 한도)
- 화물차량 : 국비 3.4백만원/건 (총사업비 17백만원)이하
- 냉동·장탐차 : 국비 4백만원/건 (총사업비 20백만원)이하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분야(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 ▶ 지원대상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 주요내용
 -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소액 및 공모사업,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외 9개 사업) 시행지침 일부 변경
 - 지원한도, 단가변경사항 적용 : 2024년도 사업 신청시(소액 : 2023. 1.~2월중) 2023년도 지침을 적용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 '2023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참고)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7.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산림공원과 (☎ 063-560-2582)

■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 (대상산림) 산림 관련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 (산정방법) 총지급금 : 매매대금 + 이자액 + 지가상승보상액, 10년간(120개월) 매월 분할지급
- (매수절차) 산림의 소재지 관할 매수기관 상담 → 매도승낙서 접수 → 대상지 검토 및 결정 → 매수가격 결정(감정평가) → 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선지급금 + 1회차분 대금' 지급 → 10년간 매월 대금 지급 완료

| 구 분 | 현 행 | 확 대 |
|----------------------|-----------------------------|------------------|
| ○ 단가조정 | 일시지급형 기준단가 (전국평균 943원/㎡) | 기준단가 삭제 |
| ○ 선지급금 (최초 1회 지급) | 매매금액의 20% | 매매금액의 40% 이내로 개선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 ▶ 추진배경 :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경제림육성, 산림복지 서비스 증진
- ▶ 주요내용 :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상승을 보상하는 제도
- ▶ 시 행 일 : 2022년 9월

8. 산림내 입목벌채 제도 개선

산림공원과 (☎ 063-560-2582)

▣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체계 정착을 위해 산림내 입목벌채 제도가 일부 개선됩니다.

■ (입목벌채 허가·신고 수리기간 명시)

- 입목벌채 허가·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사전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

(입목벌채 등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의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

(벌채허가 제도 강화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손실 방지 지원)

- 목재수확 계획 수립시 생태·경관·재해위험 등을 고려해 산주가 의무적으로 남겨야 하는 면적의 입목가액에 대해서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구 분 | 현 행 | 확 대 |
|--------------------------|-----------------|---------------------|
| ○ 입목벌채 허가·신고기간 | ○ 기간없음(통산 1년이내) | ○ 30일 |
| ○ 입목벌채 사전타당성조사 | ○ 없음 | ○ 일정규모 이상 타당성조사 |
| ○ 5ha 이상 벌채시 입목 존치 면적 | ○ 10% | ○ 30%(증가된 20% 손실지원) |

산림내 입목벌채 제도 개선

- ▶ 추진배경 : 대면적 입목벌채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과 친환경 입목벌채 정착
- ▶ 주요내용 : 입목벌채 허가·신고기간 30일 이내, 대규모 입목벌채시 사전타당성조사, 5ha 이상 벌채시 입목 잔존면적 30% 상향 및 손실지원
- ▶ 시 행 일 : 2023년 1월

VII. 건설·교통

1. 고속·시외버스 요금인상 91
2.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제출 의무화 92
3. 저소득층 그린 모델링 사업 확대 93
4.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확대 94
5.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95

1. 고속 · 시외버스 요금인상

건설도시과 (☎ 063-560-2418)

■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임 · 요율 상한 조정계획(5%)에 따라 시외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 고속버스 요금 인상

- 운임 · 요율 인상 : 5.0% (우등 서울 km당 90.63원⇒95.16원)

■ 시외버스 요금 인상

- 운임 · 요율 인상 : 5.0% (일반 · 직행 km당 131.82원⇒138.41원)

- 인상 노선 : 139개 노선(일반직행 107, 우등 30, 심야 2)

| 운행형태 | | | 현행 요율 | 조정 요율 | |
|----------|-------------------|-----------|-----------|--------|--------|
| 일반 직행 | 최저요금운임(10km까지 정액) | | 1,500 | 1,600 | |
| | 일반 · 직행 | 고속국도이외 | km당 | 131.82 | 138.41 |
| | | 고속국도 | 1~200km | 70.77 | 74.31 |
| | | | 201~400km | 62.62 | 65.75 |
| | | 401km 이상 | 57.18 | 60.04 | |
| | 우등일반 · 우등직행 | 고속국도이외 | km당 | 171.36 | 179.93 |
| | | 고속국도 | 1~200km | 91.99 | 96.59 |
| | | | 201~400km | 81.40 | 85.47 |
| | | 401km 이상 | 74.33 | 78.05 | |
| 고속 | 우등 | 1~200km | | 98.39 | 103.31 |
| | | 201~400km | | 90.63 | 95.16 |
| | | 401km 이상 | | 82.85 | 86.99 |
| | 일반 | 1~200km | | 67.31 | 70.68 |
| | | 201~400km | | 59.56 | 62.54 |
| | | 401km 이상 | | 54.39 | 57.11 |

고속 · 시외버스 요금 인상

- ▶ 추진배경 :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임 · 요율 상한 조정
- ▶ 주요내용 : 고속 · 시외 버스 운임 · 요율 5% 인상
- ▶ 시행일 : 2022년 11월 1일

2.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제출 의무화

건설도시과 (☎ 063-560-2572)

▣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물류시설 화재발생 피해 심화에 따른 물류창고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 작성 및 이행이 의무화됩니다.
- 물류창고업자는 해당 시·군에 물류 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제출(최초 1회) 및 1년 주기로 매년 갱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현 행

-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 필요 서류 1부



확 대

-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 필요 서류 1부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 ▶ 추진배경 : 국토교통부 물류창고업 안전관리기준 마련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개정)
- ▶ 주요내용 :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내용 · 작성방법 등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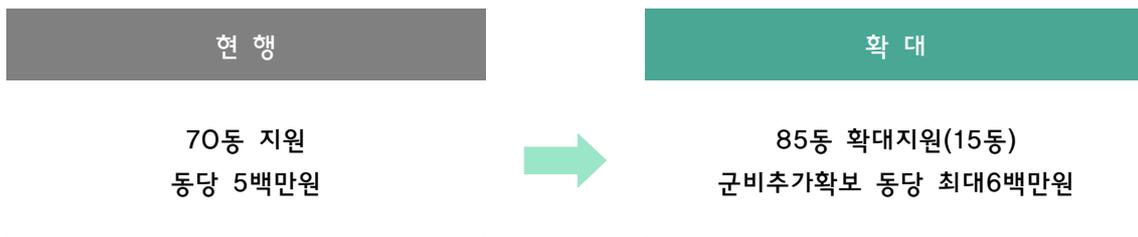
3. 저소득층 그린 모델링 사업 확대

종합민원실 (☎ 063-560-2385)

▣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 지원합니다.

- (추진목적) 주거 취약자의 집수리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단 수선유지급여 등 중복수혜자 제외)
(예 산) 510백만원 (6백만원*85동)

(지원내용) 화장실, 싱크대, 부엌개량, 도배장판 교체 등
(대행기관) 고창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다솜건축)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 지원

- ▶ 추진배경 :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 ▶ 주요내용 : 동당 최대 6백만원 지원하여 주택 개보수 지원
-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4.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확대

종합민원실 (☎ 063-560-2396)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의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등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사업비) 300백만원 (도비 150, 군비150)

(사업규모) 12동/ 동당25백만원 지원

(사업대상) 농어촌 지역의 빈집

(사업내용) 빈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 후 주거취약계층에게 4년간 무상임대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귀농귀촌,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청년, 신혼부부

| 현행 | 구분 | 확대 |
|-----------|------|-----------------|
| 1.6억원(8동) | 사업규모 | 3억원(12동) |
| 20백만원/동 | 지원금액 | 25백만원/동 |
| 5년간 무상임대 | 임대방식 | 4년간 무상임대 |
| 주거취약계층 | 입주자격 | 주거취약계층 + 외국인노동자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확대

- ▶ 추진배경 : 방치된 빈집을 새롭게 단장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취약계층에게는 무상임대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
- ▶ 주요내용 : 사업규모, 지원금액, 입주자격 등 사업 확대시행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5.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종합민원실 (☎ 063-560-2385)

■ 고창군에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 (추진목적)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
(대 상 자) 혼인(재혼)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지원금액) 대출잔액의 2% 범위내 이자 지원(연1회/연2,000천원 이내/최대3년)
(예 산) 200,000천원 (2,000천원*100가구)

| 현 행 | 신 설 |
|-----|--|
| 신설 | ◎기 간 : 2023.1.~6. ◎대 상 : 혼인(재혼)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소 둘 것 -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 추진배경 : 결혼 출산 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제고
- ▶ 주요내용 : 혼인(재혼)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대출잔액 2%이내 최대200만원까지 주택구입목적 대출이자 지원
- ▶ 기 간 : 2023. 1. ~ 6.
 - 4월 신청 ⇒ 5~6월 집행

VIII. 재난안전·소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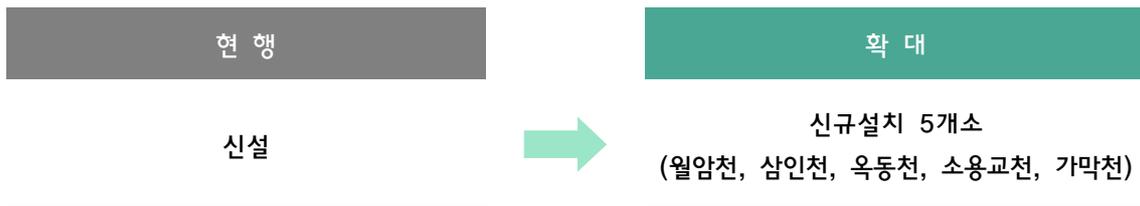
| | |
|--------------------------------|-----|
| 1.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 97 |
| 2. 환경 방사선량 개방형 알리미 확대 설치 | 98 |
| 3. 화재의 예방조치 의무 신설 | 99 |
| 4.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 강화 | 100 |
| 5.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규정 | 101 |
| 6.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대 | 102 |
| 7.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신설 | 103 |
| 8.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리 강화 | 104 |

1.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총괄과 (☎ 063-560-2664)

■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신규 설치사업으로 홍수 발생 시 소하천 주변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추진목적) 소하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홍수 발생 시 신속한 대피 가능
(대상지역)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설치 5개소
 - ▶ 고창 월암천, 아산 삼인천, 무장 옥동천, 성내 소용교천, 부안 가막천(사업비) 35백만원(균 175 / 균 175)
(사업기간) 2023. 1. ~ 2023. 12.
(사업내용)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CCTV, 수위 계측·영상 분석장치 등)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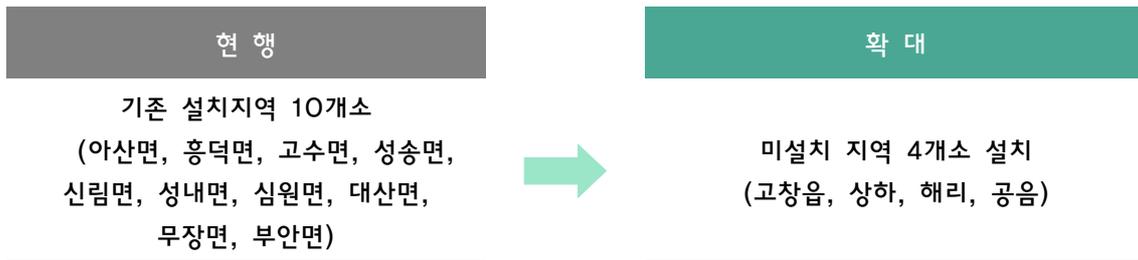
- ▶ 추진배경 : 소하천 홍수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통하여 인명피해 방지
- ▶ 주요내용 : CCTV, 수위 계측·영상 분석장치 등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2. 환경 방사선량 개방형 알리미 확대 설치

안전총괄과 (☎ 063-560-2731)

□ 환경 방사선량 개방형 알리미가 확대 설치됩니다.

- (추진목적) 방사능 재난 시 환경방사선량 정보의 신속한 공유로 효율적인 주민보호대책 추진 및 주민 불안감 해소
(대상지역) 알리미 미설치 지역 4개소(고창읍, 상하, 해리, 공음)
(사업비) 60백만원(도18/군42)
(사업기간) 2023. 1. ~ 2023. 11.
(사업내용) 개방형 환경방사선 정보 알리미 설치



환경 방사선량 개방형 알리미 확대 설치

- ▶ 추진배경 : 한빛원전의 고장·사고로 인한 주민 불안감 해소 및 알권리 충족
- ▶ 주요내용 : 개방형 환경방사선 정보 알리미 설치
- ▶ 시행일 : 도비지원금 교부 이후

3. 화재의 예방조치 의무 신설

고창소방서 방호구조과(☎ 063-560-1242)

▣ 화재 위험성이 높거나 화재 발생 시 화재 규모가 적지 않은 장소에서 화기 취급 및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등 금지.

- 화재 발생 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대상의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위험성이 있는 행위 금지.
-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한 일반적인 화재예방조치 의무를 신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구분 | 내용 |
|-------|---|
| 장소 | 1. 화재예방강화지구 2. 제조소등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판매소 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저장하는 장소 |
| 금지 행위 | 1.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2.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3.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

화재의 예방조치 의무 신설

- ▶ 추진배경 : 화재 발생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대상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 ▶ 주요내용 :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한 일반적인 화재예방조치 의무를 신설
- ▶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

4.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 강화

고창소방서 방호구조과(☎ 063-560-1242)

▣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제도를 확대함.

*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

- '화재경계지구'의 명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함
- '화재예방강화지구' 명칭변경 및 소방시설 지원근거 등 신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주요내용

- (명칭변경) 화재경계지구 - 화재예방강화지구
- (대상추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지정 가능하도록 추가
- (예산지원)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조례 제정 중)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 강화

- ▶ 추진배경 :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 강화
- ▶ 주요내용 : 명칭 변경, 지정 대상 지역 확대, 소방시설 지원 근거 마련
- ▶ 시 행 일 : 2022년 12월 1일

5.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규정

고창소방서 방호구조과(☎ 063-560-1242)

■ 화재안전취약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화재취약자에 대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
-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신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 재원시설 | 1.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2. 화재안전취약자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개선 3.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용품의 제공 4.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5.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자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화재안전취약자 소방시설 지원근거 신설

- ▶ 추진배경 :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화재 취약자에 대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
- ▶ 주요내용 : 화재 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신설
- ▶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

6.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대

고창소방서 방호구조과(☎ 063-560-1241)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 종류를 확대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을 위해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강화함
-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대 (4종→7종)

| 구분 | 소방시설 | 설치대상 |
|----------|---------|---|
| 현행 시설 | 소화기 | • 건축허가동의 이상 건축물 공사장(400㎡ 이상) |
| | 간이소화장치 | • 연)3,000㎡이상,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 600㎡ 이상 |
| | 비상경보장치 | • 연)400㎡이상,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
| | 간이피난유도선 |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작업장 |
| 확대 시설 | 가스누설경보기 |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작업장 |
| | 비상조명등 |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작업장 |
| | 방화포 | •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모든 작업장 |

화재안전취약자 소방시설 지원근거 신설

- ▶ 추진배경 :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화재 취약자에 대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
- ▶ 주요내용 : 화재 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신설
- ▶ 시 행 일 : 2022년 12월 1일

7.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신설

고창소방서 방호구조과(☎ 063-1242)

▣ 화재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건설현장의 상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신설함

- 건설현장의 상시적인 화재안전을 위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신설함

| 주요내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임대상) 2022.12.1. 이후 신축 등 건설현장<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연면적 5,000㎡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선임기간)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처벌기준) 위반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ul style="list-style-type: none">- [벌 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신설

- ▶ 추진배경 :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발생 위험성이 상존하는 건설현장의 상시적인 화재안전관리 추진
- ▶ 주요내용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신설
- ▶ 시 행 일 : 2022년 12월 1일

8.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리 강화

고창소방서 방호구조과(☎ 063-560-1245)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급대상 기준 변경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등급 조정함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특급대상물 범위를 조정하여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확보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설치대상을 3급까지 확대하여 화재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함

주요내용

- 특급대상 조정 : 연면적 20만㎡ 이상 → 10만㎡ 이상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등급 조정 : 2급 →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리 강화

- ▶ 추진배경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화재예방 및 신속한 화재대응 추진
- ▶ 주요내용 : 특급대상 조정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조정
- ▶ 시 행 일 : 2022년 12월 1일

2023년 달라지는 주요제도(요약)

| I. 경제·산업·청년 | | | |
|----------------------------|---|--|-------------------------|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계 부서 |
| 1. 고향사랑 기부제 실시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부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 광역)를 제외한 지자체 기부방법 : 온라인(고향사랑e음시스템)/오프라인(농협) 납부 기부혜택 :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신활력경제정책관 (063-560-2349) |
| 2.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 | 연 4%이내 이차보전금 지원 | 연 5%이내 이차보전금 지원 | 신활력경제정책관 (063-560-2351) |
| 3.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 | 연 4%이내 이차보전금 지원 | 연 5%이내 이차보전금 지원 | 신활력경제정책관 (063-560-2361) |
| 4. 군수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 : 부군수 위원회 근거 : 재량 위촉직 의원 비율 X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 : 군수 위원회 근거 : 의무 위촉직 의원 비율 O (1/2이상) | 신활력경제정책관 (063-560-2359) |
| 5. 투자기업 지원제도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이전 기업 : 상시고용 인원 20명 이상 대규모 투자 : 투자금액 1,500억원 이상, 기반시설 설치 비용 100억원 이상 시설 투자보조금 : 지원비율 100분의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이전 기업 :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대규모 투자 :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기반시설 설치 비용 70억원 이상 시설 투자보조금 : 지원비율 100분의 10 | 신활력경제정책관 (063-560-2354) |
| 6. 고향사랑 상품권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드형 상품권 (삼성 체크카드) 운영 특별할인 10%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NH농협카드 추가 도입 특별할인(10%) : 상시할인 특별할인(20%) : 명절 및 축제 등 | 신활력경제정책관 (063-560-2351) |
| 7. 고창지역 초·중·고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 | <신설> |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입학생에게 대학등록금 개인 부담금 최대 300만원 지원 | 인재양성과 (063-560-2926) |
| 8. 지역인재 새 출발 준비금 지원 | <신설> |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준비생 및 취업자에게 새 출발 준비금 최대 100만원 지원 | 인재양성과 (063-560-2926) |
| 9. 청년정책 거버넌스 "청년공감마당" 추진 | <신설> | ○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청년 (만 18세 ~ 45세) 대상 청년정책 거버넌스(위원회, 협의체, 네트워크 등) 추진 | 신활력경제정책관 (063-560-2367) |
| 10. 전복청년 지역정착 지원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위소득 150%이하 1년 이상 직업 종사자 50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위소득 180%이하 6개월 이상 직업 종사자 60명 | 신활력경제정책관 (063-560-2367) |
| 11. 전복형 청년활력수당 지원 | <신설> | 미취업 청년 대상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 구직활동비 지원 | 신활력경제정책관 (063-560-2367) |
| 12. 청년 신규창업 및 가업승계 지원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창업에 필요한 간접비 (임차료 등), 자기계발비 지원 가업승계 시 노후화된 시설(점포) 리모델링, 장비구입 등 지원 | 신활력경제정책관 (063-560-2364) |
| 13. 고창군 청년정책 통합 정보지 발행 | <신설> |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청년 및 지역주민 대상 통합 정보지 배부로 청년정책 안내 | 신활력경제정책관 (063-560-2367) |

Ⅱ. 복지·여성·보건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계 부서 |
|-----------------------------|--|--|--------------------------------|
| 1. 호국보훈수당 인상 및 대상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전몰군경 및 순직 군경의 배우자, 무공수훈자,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특수 임무유공자 지원, 5·18 민주 유공자, 독립유공자 지원 수당 매월 9만원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무공수훈자,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지원 수당 매월 11만원 지원 | 사회복지과 (063-560-2272) |
| 2.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의료비 지원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틀니와 지대치, 임플란트 시술비 본인부담금 및 사후관리비 지원 | 보건소 건강증진과 (063-560-8755) |
| 3.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자녀 100만원 2자녀 200만원 3자녀 500만원 4자녀 700만원 5자녀 이상 1,000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보건소 건강증진과 (063-560-8573) |
| 4.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창군 주민등록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산모 산후조리비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창군 주민등록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산모 산후조리비 출생아 1인당 200만원 확대 지원 | 보건소 건강증진과 (063-560-8762) |
| 5.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재산기준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재산 공제액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35백만원 -의료급여 29백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52백만원 -의료급여 38백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재산 공제액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53백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112백만원 | 사회복지과 (063-560-2283) |
| 6.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기준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 : 1,459천원 이하 일반재산기준 : 1억3천만원 금융재산기준 : 600만원 이하 생계지원금액 : 488천원 연료비지원금액 : 106천원 교육지원금액 - 초124천원 ~ 고207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 : 1,558천원 이하 일반재산기준 : 1억3천만원 금융재산기준 : 600만원 이하 생계지원금액 : 623천원 연료비지원금액 : 110천원 교육지원금액 - 초127천원 ~ 고214천원 | 사회복지과 (063-560-2284) |
| 7.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선정기준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세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고소득자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세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고소득자 제외) | 사회복지과 (063-560-2283) |
| 8.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수당 지급액 월 4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수당 지급액 월 6만원 | 사회복지과 (063-560-2275) |
| 9.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수당 30만원 지원 및 보육료 바우처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급여 0세(0~11개월) 70만원 1세(12~23개월) 35만원 및 보육료 바우처 차액 지원 | 인재양성과 (063-560-2938) |
| 10.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 구강검진 3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29개월, 30~41개월, 42~53개월, 54~65개월 구강검진 4회 확대 | 보건소 건강증진과 (063-560-8748) |

| | | | |
|-----------------------------|---|--|--------------------------------|
| 1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확대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건강보험료 하위 70%이하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건강보험료 하위 80%이하까지 확대 지원 | 보건소 건강증진과 (063-560-8762) |
| 12.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급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임건강보험급여 적용횟수 소진자 소득차등없는 난임시술비 추가지원 | 보건소 건강증진과 (063-560-8762) |
| 13. 로타바이러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백신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타바이러스 선택 예방 접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타바이러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도입 | 보건소 보건행정과 (063-560-8758) |
| 14.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한도 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원시간한도 (시간제 기준) 연 840시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원시간한도 (시간제 기준) 연 960시간 | 인재양성과 (063-560-2933) |
| 15. 자립준비청년(보호 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종료연령 상한 : 만18세 자립수당 : 월35만원 자립정착금 : 800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종료연령 상한 : 만24세 자립수당 : 월40만원 자립정착금 : 1,000만원 | 인재양성과 (063-560-8093) |
| 16. 결식아동 급식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식아동 급식지원 1식 단가 7,00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식아동 급식지원 1식 단가 8,000원 | 인재양성과 (063-560-2938) |
| 17.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 가구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위소득기준 52%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위소득기준 60%이하 | 인재양성과 (063-560-2932) |
| 18.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가구 범죄예방 및 심리적 불안해소를 위한 실외형 CCTV 또는 기타 안심장비 지원 | 인재양성과 (063-560-2931) |
| 19.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기관을 찾아오는 군민들에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장비 보강 - 보건소 X-ray 장비 교체 - 심원면보건지소 자동약품포장기 구입 | 보건소 보건행정과 (063-560-8715) |
| 20. 경로당 와이파이 구축 지원 사업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경로당 181개소 - 지원내용 : 와이파이 이용료 지원 | 사회복지과 (063-560-2290) |
| 21.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 실시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65세 이상 건강고위험군 327명 결핵 이동검진 실시 | 보건소 보건행정과 (063-560-8777) |
| 22.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면제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5세 이상 보건기관 이용 본인부담금 면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보건소 보건행정과 (063-560-8714) |
| 23.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 사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 환경위생과 (063-560-2887) |

Ⅲ. 농·축·수산·식품

| 구 분 | 중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계 부서 |
|------------------------------------|---|--|--------------------------|
| 1.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 만18세이상~만50세 미만 - 지원금 : 최대3억원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 만18세이상~만51세 미만 - 지원금 : 최대3억원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농업기술센터 (063-560-8834) |
| 2.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품목(2개) - 두류, 일반작물 (시군별 1품목) • 사업단가 : 60만원/h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품목(4개) - 두류(일반공 제외), 일반작물, 풋거름작물, 휴경 • 사업단가 : 200만원/ha | 농업정책과 (063-560-2527) |
| 3.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 350천원/건 • 유기가공식품 : 1,000천원/건 • 취급자 인증 : 550천원/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인증 : 350천원/건 • 잔류농약 검사비 : 90천원/건 • 유기가공식품 인증 : 1,000천원/건 • 취급자 인증 : 550천원/건 | 농업정책과 (063-560-2530) |
| 4.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단가인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당 단가(천원/m²) - 소 260, 돼지 770, 가금 36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 비용 상승 등 반영하여 축종별 지원단가 상향 조정 - 소 380, 돼지 967, 가금 662 (천원/m²) | 축산과 (063-560-2614) |
| 5.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단가인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 60천원/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 63천원/톤(3천원 인상) | 축산과 (063-560-2614) |
| 6. 식육포장처리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자율 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육포장처리업 HACCP 단계적 의무적용 (1단계 : '23.1.1.시행) | 축산과 (063-560-2619) |
| 7.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는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견 소유자의 의무 강화 -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치 •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는 장소 | 축산과 (063-560-2629) |
| 8. 꿀벌 구제약품 지원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꿀벌 응애류 구제약품 지원 - 20천군/25백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꿀벌 응애류 구제약품 지원 - 30천군/38백만원(전년대비 52% 확대) | 축산과 (063-560-2619) |
| 9.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유도등 설치 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소 완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 야간 작업 시 육지와 바다의 방향 혼동에 따른 고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유도등) 설치 | 해양수산과 (063-560-2732) |

| | | | |
|----------------------------|--|--|--------------------------|
| 10.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 <신설> |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지원 | 해양수산과 (063-560-2733) |
| 1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대출 이차보전 |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정책자금 대출 이차 자부담 2% |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정책 자금 대출 이차 자부담 2% 중 1% 3년간 군비 지원(최대 3백만원/연) | 농업기술센터 (063-560-8826) |
| 12. 마을 드론 방제 확대 지원 | <신설> | • 무인 항공방제를 위한 방제용 드론 10대 지원 | 농업기술센터 (063-560-8842) |
| 13. 농작업 대행서비스 상시 지원으로 확대 | • 연초 정해진 신청기간에 한시 접수 | • 농촌 취약계층이 적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접수 | 농업기술센터 (063-560-8849) |
| 14.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단가 상향 | • 1일 지원기준 단가 80,000원 | • 1일 지원기준 단가 90,000원 | 농업정책과 (063-560-2522) |
| 15.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기종 확대 | • 지원기종 6종 (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 파종기) | • 지원기종 7종 (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 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 농업정책과 (063-560-2516) |
| 16.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대상 확대 |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가구만 신청 가능 |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합산)이 50,000㎡ 이상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가구도 신청 가능 | 농업정책과 (063-560-2524) |
| 17. 농업용 친환경 전기운반차 지원 시행 | <신설> | • 사업규모 : 42대 • 사업비 : 294,000천원 (군비 50% 자부담 50%) | 농업정책과 (063-560-2537) |
| 18. 전략작물 직불금 시행 | <신설> | • 사업량 : 1,247ha • 사업비 : 865백만원(국비) • (동계) 50만원/ha - 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하계) 100만원/ha - 가루쌀, 하계콩 • (이모작) 250만원/ha - 밀, 조사료 / 가루쌀, 하계콩 | 농업정책과 (063-560-2527) |

| | | | |
|-----------------------------|--|--|--|
| 19.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시행지침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 '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쌀직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 1. 1. ~ '00. 12.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 • (밭직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1. 1. ~ '14. 12. 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토지 • (조건불리직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 1. 1. ~ '05. 12. 31.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19삭제 → 기준연도 충족 필요 - 1단계 : 최근 농지이용여부 조사 - 2단계 : 1단계 충족 + '16년 이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이력 - 3단계 : 1단계 충족 + 토지대장(이력정보 포함) 및 포털서비스맵 조사 - 4단계 : 1단계 충족하거나 기준연도를 확인할 수 없는 농지인 경우 | 농업정책과 (063-560-2526) |
| 20. 농작물 재해보험 보조비율 상향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의 80%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의 85%지원 | 농업정책과 (063-560-2528) |
| 21. 시설하우스 사업 지원단가 인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동 : 22,000원/㎡ - 연동 : 96,00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동하우스 : 33,000원/㎡ - 연동하우스 : 130,000원/㎡ • 대상사업 : 2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 농업정책과 (063-560-2532) |
| 22.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보조비율 상향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 40%, 자부담 6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 50%, 자부담 50% • 대상사업 : 12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특작 생산단지 지원(8개 품목) -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하우스 작물 재배용 수정별 지원사업 - 고추 건조기 지원사업 -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농업정책과 (063-560-2528, 063-560-2532, 063-560-2533) |
| 23. 농촌인력 수급확대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인원 : 253명 (MOU체결 215,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23, 국내체류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계획 : 600명 (MOU체결 300,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250, 공공형 계절근로 50) | 농업정책과 (063-560-2467) |
| 24. 행복콜택시 운행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회관 ~ 최단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0.7km 이상인 마을 (13개 읍면 94개 마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회관~최단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 (13개 읍면 153개 마을) | 농촌활력과 (063-560-2705) |
| 25.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시행 |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소득 50%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영양보충 식품비 차액 지원 | 농촌활력과 (063-560-2737) |
| 26. 우유바우처 시범 사업 전환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무상우유급식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 바우처 카드(월 15,000원) 제공 | 축산과 (063-560-2616) |

IV. 세제·부동산·행정

| 구 분 | 중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계 부서 |
|---|---|---|-------------------------|
| 1.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 • 별도 신고절차 없음 | • 처분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 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납부시 연가산세 없음 | 재무과 (063-560-2477) |
| 2.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 | <신설> | • 창업기업 및 사업장신설·이전시 취득세 100%감면 | 재무과 (063-560-2477) |
| 3. 개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제도 도입 | <신설> | • 종합·퇴직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세액이 1백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재무과 (063-560-2489) |
| 4. 원시취득 과세표준 개정 | • 원칙 : 신고한 가액 • 예외 : 시가표준액 | • 원칙 : 사실상의 취득가격 • 예외 : 시가표준액 | 재무과 (063-560-2477) |
| 5. 무상취득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도입 | • (원칙) 시가표준액 | • (원칙) 시가인정액 • (예외) 시가표준액 | 재무과 (063-560-2477) |
| 6. 도입부동산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 과세표준 기준 변경 | • (원칙)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 ※ 다만 개인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 | • (원칙) 개인, 법인 모두 사실상의 취득가격 | 재무과 (063-560-2477) |
| 7. 쉽고 빠른 규제개혁신고센터 상시 운영 | • 온라인 규제개혁신고 센터 운영 | • 홈페이지 배너 설치(원클릭) 및 오프라인 상시 창구 운영 | 기획예산실 (063-560-2256) |

V. 문화·체육·관광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계 부서 |
|------------------------------|---|--|---------------------------|
| 1.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운영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의 해 각종 이벤트·행사 • 시티투어·팸투어 운영 • 각종 할인연계지원 이벤트 운영 • 초중고 특별 현장체험학습/수학 여행 프로그램 운영 • 공연·전시·체험프로그램 강화 •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 | 관광산업과 (063-560-8598) |
| 2. 유네스코 세계유산 투어 운영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 관광산업과 (063-560-2949) |
| 3. 반려동물 문화·관광 산업 거점 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동반 여행 문화 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9개소) 지원 | 축산과 (063-560-2629) |
| 4.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5~18세 유·청소년에게 1인당 매월 85천원 범위 내 수강료 지원 (최소 10개월 이상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5~18세 유·청소년에게 1인당 매월 95천원 범위내 수강료 지원 (최대 12개월 지원) | 체육시설사업소 (063-560-8911) |
| 5.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9~64세 장애인에게 1인당 매월 85천원 범위내 수강료 지원 (최소 10개월 이상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9~64세 장애인에게 1인당 매월 95천원 범위내 수강료 지원 (최대 12개월 지원) | 체육시설사업소 (063-560-8911) |

VI. 환경·녹지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계 부서 |
|------------------------------|---|--|--|
|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용 컵,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합성수지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수건 및 소포백 사용규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용 종이컵, 빨대·젓는 막대, 우산비닐 추가 사용규제 | 환경위생과 (063-560-2917) |
| 2.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4·5종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 종합민원실 (063-560-2408) 환경위생과 (063-560-2875) |
|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등급까지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기폐차 : 5등급 경유차만 지원 매연저감장치 : 5등급 경유차만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기폐차 : 4등급·5등급 경유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 5등급 경유차만 지원 | 환경위생과 (063-560-2876) |
| 4.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배출허용기준 항목 25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항목 확대 : 33종 배출허용기준 신설(8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트알데하이드, 이황화메틸, 아닐린, 벤지딘, 히드라진, 프로필렌옥사이드, 베릴륨, 에틸렌옥사이드 | 환경위생과 (063-560-2875) 종합민원실 (063-560-2408) |
| 5. 오수처리시설 준공 수질검사대상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처리용량 50m³ 미만의 오수처리시설방류수 준공 수질 검사대상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처리용량 3m³ 이하의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준공 수질검사 대상 제외 | 종합민원실 (063-560-2408) |
| 6. 2023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시행지침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요건 공통사항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 생산자단체에 대하여는 우선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요건 공통사항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 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임업인, 생산자단체에 대하여는 우선지원 - 자조금 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 산림공원과 (063-560-2591) |
| 7.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 <기준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지급형 기준단가 (전국평균 943원/m²) <선지급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매금액의 20% | <기준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단가 삭제 <선지급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매금액의 40% 이내로 개선 | |
| 8. 산림내 입목벌채제도 개선 | <입목벌채 허가·신고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없음(통상 1년이) <입목벌채 사전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5ha이상 벌채시 입목 존치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 | <입목벌채 허가·신고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일 <입목벌채 사전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규모 이상 타당성조사 <5ha이상 벌채시 입목 존치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증가된 20% 손실지원) | |

Ⅶ. 건설·교통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계 부서 |
|------------------------------|--|---|-------------------------|
| 1. 고속·시외버스 요금인상(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버스 우등 서울 km당 90.63원 시외버스 km당 131.82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버스 우등 서울 km당 95.16원 시외버스 우등 서울 km당 138.41원 | 건설도시과 (063-560-2418) |
| 2.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 물류창고업 사업운영 계획에 대한 서류 | 물류창고업 사업운영계획에 대한 서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 | 건설도시과 (063-560-2572) |
| 3. 저소득계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확대시행 | 총사업비350백만원 (5백만원*70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사업비425백만원 (5백만원*85동) 국비 85백만원 추가확보 (1백만원*85동) ※ 동당 최대 6백만원 지원 | 종합민원실 (063-560-2385) |
| 4. 희망하우스빈집재생 사업 확대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사업비 1.6억원(동당 20백만원지원, 총8동) 주거취약계층에게 5년간 무상임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사업비 3억원 (동당25백만원 지원, 총12동) 주거취약계층+외국인노동자에게 4년간 무상임대 | 종합민원실 (063-560-2396) |
| 5.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재혼)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목적 대출 이자비용을 대출잔액 2% 범위내 최대 200만원 연1회 총3년까지 지원 | 종합민원실 (063-560-2385) |

Ⅷ. 재난안전.소방

| 구 분 | 중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계 부서 |
|---------------------------|---|--|----------------------------------|
| 1.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설치 5개소 - 고창 월암천, 아산 삼인천 성내 소용교천, 무장 옥동천 부안 가막천, | 안전총괄과 (063-560-2664) |
| 2. 환경 방사선량 개방형 알리미 확대 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설치지역 10개소 (아산면, 흥덕면, 고수면, 성송면, 신림면, 성내면, 심원면, 대산면, 무장면, 부안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대 설치지역 4개소 (고창읍, 상하, 해리, 공음) | 안전총괄과 (063-560-2731) |
| 3. 화재의 예방조치 의무 신설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신설 | 고창소방서 방호구조과 (063-560-1242) |
| 4.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경계지구 소방시설 지원근거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예방강화지구(명칭변경) 소방시설 지원근거 신설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지정 가능 | 고창소방서 방호구조과 (063-560-1242) |
| 5.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규정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신설 | 고창소방서 방호구조과 (063-560-1242) |
| 6.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를 확대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 고창소방서 방호구조과 (063-560-1241) |
| 7.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신설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신설 | 고창소방서 방호구조과 (063-560-1242) |
| 8.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리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급 연면적 20만㎡이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2급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급 연면적 10만㎡이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3급이상 | 고창소방서 방호구조과 (063-560-1245) |